

연구보고 2005-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ounting Law System of North Korea

손희두(연구위원)

Son Hee Doo

2005. 11

국문 요약

북한의 회계법제는 크게 분류해 보면 첫째, 『회계법』을 비롯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제, 둘째, 지역에 관계 없이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 셋째,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북한의 회계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왔고, 이러한 변화는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3년 3월 5일 『회계법』(총 5장 48개조)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모형을 상당부분 모방하고 있고, 관리회계적 측면에서 벗어나 재무회계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북한의 『회계법』 제정에 따라 그 세부규정인 회계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 일정부분 부합되는 회계기준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회계법제는 시기별로, 법제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요소로부터 탈피하여 국제적인 회계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몇 년 이내에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세계회계기준의 통일이 전망되

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도 현재의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규정에 따르도록 하지 말고 국제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기업운영에 투명성이 증대되며, 이 경우 많은 남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키워드 : 북한, 남북한, 회계, 회계법, 부기계산, 회계검증, 재정,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 교류협력

Abstract

The accounting law system of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s: That is, legal system generally applied to its own agencie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Accounting Act; legal system normally applied to foreigners' investments regardless of the region; and legal system specifically applied to a special economic zone like the Kaesong Industrial Zone. This study reviews the accounting law system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Since 1980s, North Korea has driven the restructuring and opening policy of its economy, leading the Kim Jong-il regime to a change in its socialistic planned economy system. The whole structure of its accounting law system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such a change. And also, since the July-1 (2002)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were implemented for partially introducing market economy factors to its existing planned economy system, its perception of the accounting system has largely changed.

Adopting the Accounting Act(5 chapters and 48 articles in total) in North Korea in 2003 was brought from an extension of such a change. This Act was made upon the model of the capitalistic accounting system though limited, and characterized by introducing the financial accounting factors free from the managerial accounting aspec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accounting law system of North Korea periodically and categorically, it is ascertained that

the system has been continually developing toward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out of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factors. According to most of specialists, in a number of years, the unification of global accounting system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s being observed. Therefore, if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North Korea for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adopt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nstead of the existing 'Foreign-invested Company Book-keeping Regulation', it will secure more transparency in managing companies. In this case, it will be able to attract more investments by foreign companies as well as South Korean companies.

※ Key Word: North Korea, accounting law system, Accounting Act, special economic zone, the Kaesong Industrial Zone, book-keeping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2 장 북한 회계법제 개관	15
제 1 절 북한 회계법제의 위상	15
1. 경제체제와 회계제도	15
2. 북한법제상 회계와 부기	16
3. 북한법제상 재정과 회계	18
제 2 절 북한 회계법제의 변천과 구조	23
1. 북한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23
2. 북한 회계법제의 구조	27
제 3 절 중국 회계법제의 영향	31
1.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 구조	31
2. 북한 회계법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	33
제 3 장 북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37
제 1 절 『회계법』 제정의 의의	37
1. 회계법의 제정배경	37
2. 회계법 채택의 의의	39
3. 회계법의 특징	40
제 2 절 회계법의 내용과 분석	41
1. 회계법의 주요 내용	41
2. 재정법과 회계법의 연계성	62

제 3 절 북한 회계법의 평가와 과제	77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81
제 1 절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81
1.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구조	81
2.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내용 및 분석	84
3.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118
제 2 절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120
1.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121
2. 개성공업지구 기업채정규정	137
3.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142
4.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153
제 3 절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58
1.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 구조	158
2.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북한 회계법제의 비교	160
제 5 장 북한 회계법제의 평가와 시사점	165
【 부 록 】	
1. 회계법	173
2.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179
3.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189
4. 개성공업지구 기업채정규정	197
<참 고 문 헌>	201

제1장 서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교환 등 모든 경제활동이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 모든 과정이 시장의 자율적 움직임을 통하여 조절된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고,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중앙계획기구의 지시와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은 거의 작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재무상태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 '회계'제도의 기본성격상 그 중요성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가 채택하고있는 경제체제에 따라 경제활동의 도구이자 지표로서의 회계제도에 접근하는 관점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기업회계는 재무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의 두 측면이 있는데, 재무적 측면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관리적 측면은 기업의 계획과 통제를 위한 내부적 정보 제공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북한의 회계는 재무회계적 측면보다는 관리회계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 왔다.¹⁾ 이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정부회계가 법

1) 회계학에서의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인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부보고목적의 회계이며,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라고 하고, '관리회계'는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부보고목적의 회계이며, 재무회계와는 다른 관점에서 회계정보를 수집·정리·보고·해석하여 관리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회계학의 체계상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회계에 있어 둘 다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은 '회계학' 항목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회계제도는 부기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251~1252면 '회계학' 항목 참조). 이에 따르면 관리회계는 재무회계보다 앞선 회계원리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회계학의 발전 단계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재무적 측면을 중시하는지(재무회계), 아니면 관리적 측면을 중시하는지(관리회계)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규정 준수의 여부와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중요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북한은 최근까지 생산수단을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비교적 순수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회계제도에 있어서도 각 하부조직들의 활동을 국가에 보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는 그 보고를 토대로 하여 하부조직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재무회계적 측면보다는 관리회계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왔고, 이러한 변화는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사실상 정부회계가 전부이던 형편에서 벗어나 외국과의 합영·합작이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제를 대폭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을 위한 회계법제도 자연스럽게 제·개정되게 되었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역지대³⁾를 비롯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의 설치와 함께 이들 지역의 기업들에 적용할 회계법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⁴⁾ 이후 북한의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2) 김병호,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제1권 제3호, 2004. 12, 61면 참조.

3) 북한은 2002년 「라선무역경제무역역지대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라진·선봉경제무역역지대’를 ‘라선경제무역역지대’로 개칭하였다.

4) 북한이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존 경제관리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즉, 물가 및 임금 등 전반적 가격의 인상, 독립채산제의 강화에 의해 기업소·공장 경제활동에 일부 자율권 허용, 무상을 원칙으로 했던 사회보장체계의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북한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조치이다.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다만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병존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이 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회계법』(총 5장 48개조)을 채택하고 동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승인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모형을 상당부분 모방하고 있고, 관리회계적 측면에서 벗어나 재무회계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에 뒤따르는 내부경제시스템의 진화를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제도의 내용과 변화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이해를 높임과 아울러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회계법제는 크게 분류해 보면 첫째, 『회계법』을 비롯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이하에서는 ‘회계관련 일반법제’라고 하기로 한다), 둘째,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이하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라고 하기로 한다), 셋째,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이하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등으로 특정 경제특구 명칭을 붙여 구분하기로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분류에 속하는 회계관리법제는 그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연히 약간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회계관리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회계관리제도로 진화해 가는 과정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분과 이해에 따라 북한의 회계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경제의 특성이자 고질적 문제점인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⁵⁾을 극복하고 회계보고와 결산보고를 통해 낭비와 비효율을 철저히 막기 위해 제정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북한 경제개혁의 현실과 방향을 조망하고 향후 남북한 경제 교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와 관련한 회계법제 연구를 통해서

5)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징으로 경제주체들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자원 등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1장 서론

향후 북한 또는 경제특구에 투자하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상당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표1>에서는 본문 및 북한법제 내용의 이해상 편의를 돕기 위하여 남북한간의 회계관련 법령용어를 대비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 표 1 > 남북한 회계관련 용어대비표

남한 용어	북한 용어
- 회계	- 회계(재정부기, 부기계산)
- 차변	- 차방(정방)
- 대변	- 대방(부방)
- 대차대조표	- 재정상태표(부기균형표, 정부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재정부기결산분석표(손익계산표)
- 시산표	- 시산표
- 합계잔액시산표	- 종합계산자리유동고일람표
- 잔액	- 잔고
- (총)분개장	- 분기일기장
- 총계정원장	- 종합계시원장(종합계산자리원장)
- 현금흐름표	- 현금유동표
- 회계감사(會計監事)	- 재정검열원
- 회계감사(會計監查)	- 회계검증(부기검증) - 회계검사(:국가기관의 경우) - 경리검사(:일반기업의 경우)
- 자본	- 자본(등록자본금)
- 부채	- 부채(채무)
- 자산	- 재산

남한 용어	북한 용어
- 비용	- 지출(비용)
- 수익	- 수입
- 이익	- 이윤(이익)
- 결산	- 결산(또는 총화)
- 자산 재평가	- 고정자산 재평가
- 계정 - (계정)과목	- 계시(계산자리)
- 이연자산	- 연상자산
- 어음	- 수형(手形)

제 2 장 북한 회계법제 개관

제 1 절 북한 회계법제의 위상

1. 경제체제와 회계제도

회계제도는 경제체제를 수치적(화폐단위)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회계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회계제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차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의 차이이다. 경제주체의 차이는 경제체제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이 국·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이 개인의 물질적 동기보다는 국가 또는 사회의 목적과 의사가 반영된 계획경제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서 회계제도도 관리와 감독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 의해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를 가진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회계제도도 그 경제주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둘째, 회계원칙의 차이이다. 자본주의 회계제도는 회계실무에서 회계관습이 충분히 축적된 후 회계제도의 이용자 및 전문가에 의해 회계원칙으로 정립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회계제도는 중앙계획당국의 필요성에 의해 생성된다.⁶⁾

셋째, 회계개념의 차이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본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회계개념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회계등식의 차이, 기금 및 원가의 차이, 회계목적의 차이, 회계기본가정의 차이 등을 열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계등식의 차이이다. 회계등식은 회계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6) 송동섭, “중국 회계제도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5집 제3호, 2000. 12, 15면.

관계이다. 계획경제 하의 회계등식은 “자금사용=자금원천”이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영기업은 대부분 자금조달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거나 은행차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자본주의의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이다. 이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구하고, 주주의 지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⁷⁾

넷째, 회계요소간의 차이이다. 자본주의 회계제도와 사회주의 회계제도는 그 성질상 자산평가방법, 대손충당금 계산, 감가상각방법, 이익잉여금 분배순서, 재무제표의 종류, 소득세에 대한 처리 등에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⁸⁾

2. 북한법제상 회계와 부기

북한의 법제에 ‘회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부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회계’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북한정권 초기에 제정된 『회계규정』(1946), 『행정기관 회계 검사에 관한 규정』(1948) 등에 회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기업소 경리검사에 관한 규정』(1948),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행정기관의 경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1949) 등에는 경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⁹⁾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개정된 법령들에서는 대체로 부기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법률명칭에 부기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

7) 송동섭, 앞의 논문.

8) 이러한 각 회계요소간의 처리방법은 사회주의국가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 국가의 경제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회계제도와 자본주의 회계제도 간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송동섭, 앞의 논문, 14~18면 참조.

9) 북한에서 ‘경리’라는 용어는 그 이후 금전출납과 같은 ‘회계관리’와 관련된 의미보다는 ‘경영관리’라는 의미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도 ‘경리’를 ①경제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 ②(기관, 기업소에서) 성원들의 생활과 관련한 일이나 물자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맡아보는 사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금전출납과 관련된 의미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85면 참조.

은 1990년대에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1995), 『외국인 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1996),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1996) 등이 대표적이고, 법문 속에는 『합영법』(1984), 『합작법』(1992)과 그 시행규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회계라는 용어보다 부기라는 용어를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기가 회계보다는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반영한 용어로 파악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의 ‘회계’ 항목에서 “회계는 부기와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개념이다..... 자산의 증감변화를 기록계산하는 데서 일정한 질서와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그 결과와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데로부터 생겨난 것이 부기이다. 부기는 매 시기 이루어지는 거래계산을 전문하는 사무의 기술이다. 따라서 부기는 회계의 기술적 측면의 한 분야로 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관청회계, 기업회계는 착취관계를 반영하며 자본가들은 회계를 <영업비밀>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거래의 진실을 가리우거나 조세회피수단으로 리용한다”고 다소 부정적이며, 자본주의적인 것으로만 설명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¹⁰⁾

반면, ‘부기계산’ 항목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부기계산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제정하는 방법론에 따라 진행하며 사회주의적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며 국가로부터 시달되는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수행과 생산자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복무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기계산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리윤을 짜내기 위한 영리계산수단으로 리용된다”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 측면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와 인민경제계획에 기여하는 부기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회계’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한 기술적 의미만을 내포한 ‘부기’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관리방식에 보다 적합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10)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251면, ‘회계’ 항목 참조.

보인다. 이는 동시에 회계의 재무적 측면보다는 관리적 측면을 보다 중요시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방과 경제특구 설치가 본격화된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법령에서 ‘부기’라는 용어 대신에 새롭게 ‘회계’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즉, 합병법(2001. 5. 17 수정), 외국인투자은행법(2002. 11. 7 수정) 등의 개정을 통해 ‘재정부기성원’을 ‘재정회계성원’으로, ‘재정부기계산’을 ‘재정회계계산’으로, ‘재정부기계산규범’을 ‘재정회계계산규범’으로, ‘재정부기결산서’를 ‘재정회계결산서’로 하는 등 ‘부기’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회계’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마침내 『회계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령용어의 변화라기보다는 회계제도에 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회계(accounting)를 단순한 장부기입 즉, 부기(book-keeping)로부터 보다 중요한 정책적인 과정으로 격상시킨다는 의미와, 또한 관리회계적 측면에 재무회계적 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 갈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북한법제상 재정과 회계

(1) 북한에서의 재정의 의미

한 국가의 경제는 크게 나누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정부부문)의 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부문에 의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게 된다.¹¹⁾

그런데 북한에서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국가에서 정의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은 ‘재정’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따

11) 정민수, “남·북한 재정기능과 북한재정의 발전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2호, 1998. 10, 185면 참조.

12)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라서 남북한 모두 정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재정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재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만을 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재정개념과는 차이가 있다.¹³⁾

북한의 경우 중앙계획기구(국가계획위원회)가 국가목표를 고려하여 경제적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재정은 이러한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달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은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관계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관장하고 있으며,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¹⁴⁾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재정이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 등 국가경제의 활성화 역할에 치중하는 반면, 북한의 재정은 국민총생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만큼¹⁵⁾ 국가경제활동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⁶⁾

1073면 참조.

13) 이 정의는 재정학적 관점의 정의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재정을 “개인, 가계, 기업 따위의 경제상태”라고 재정을 넓게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재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에서의 재정이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도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정의상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2면 및 각주 참조.

14) 손광락, “북한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9집, 1997. 3, 17면 참조.

15) 북한의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까지는 70%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크게 높아져 1993~94년에는 90%를 넘기도 하였다. 1995년 북한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이 비중도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1년 다시 상승하여 62.4%를 보이고 있다. 이는 30% 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1970~80년대(60~80%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북한은 매년 3~4월경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발표내용과 형식을 바꾸면서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 예산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이 기간에는 예산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예산규모 대신 전년도대비 증가율 또는 계획대비 비율만 발표하였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11~12면 참조.

16) 정민수, 앞의 논문, 185~186면 참조.

북한재정은 국가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계획, 각 생산단위간의 자원배분, 개인소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소득 재분배, 그리고 예산집행을 통한 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한 재정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중에서 회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재정계획기능과 재정통제기능이다.

먼저, 재정계획이란 정부가 세운 국가 및 기업의 경제활동 계획이 인민경제계획이며 이를 자금수급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다. ‘재정’에 관한 개념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재정법』(1995년 제정, 2004년 개정)에서도 제3장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북한의 재정에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기능수행을 위한 경제활동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이며 생산과 분배 등 제반 경제적 과제가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국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도 직접 수립하며 기업은 이에 따라 생산 및 판매활동을 전개해야 한다.¹⁷⁾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벌어들일 돈과 쓸 돈을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기관·기업소별로 세운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을 의미하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회계이다.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이다.¹⁸⁾

다음으로 재정통제는 재정계획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적, 사후적 감독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통제는 사회주의국가가 경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통제의 중요한 형태이다. 재정통제는 화폐적 공간을 통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법적, 행정적 통제와 같은 다른 국가적 통제형태들과 구별되며, 재정적 공간의 이용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통제라는 의미에서 은행통제와도 구별된다.¹⁹⁾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영계산, 즉 회계는 재정통제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²⁰⁾

17)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2면.

18) 『회계법』 제2조.

19)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98면 ‘재정통제’ 항목 참조.

20) 경영계산은 “기관, 기업소 경영활동과 그 실태 및 전망을 숫자적으로 타산하고 분

북한의 국민총생산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 특구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재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비례하여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에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

북한의 재정법제는 <표2>에서 보다시피 크게 재정법과 인민경제계획법으로 구성된다. 재정법 제6조에서는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 행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재정과 인민경제계획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표 2 > 북한 재정법제의 개요

법 령	제 · 개정 사항
재 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 8. 3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1호로 채택 -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2002. 5.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25호로 수정보충 - 2004. 4. 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보충
인민경제계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4. 9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 2001. 5. 17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

국가의 재정계획에는 기업소 재정계획, 경제 부문별 재정계획, 지방별 재정계획, 각 재정계획을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한 국가종합재정계획, 국

석하는 사업”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기관, 기업소들에서 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업무 계산과 부기계산, 원가계산을 비롯한 모든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42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산은 업무계산, 부기계산, 원가계산, 경영통계계산, 계획계산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66면 참조.

가종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 국가예산(또는 기본재정계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가예산’과 ‘기업소 재정계획’이다.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라고 천명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회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누고,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하고 있다(제3조). 또한 북한 회계법은 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제9조). 그런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실상 국가의 소유와 다름이 없으며,²¹⁾ 북한의 『재정법』(1995 제정, 2004 개정)에서도 제3장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즉, 회계제도는 재정계획, 실행정형 및 재정통제를 뒷받침하는 기초이자 도구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재정은 재정자원의 부족, 재정정책의 경제조절기능 결여, 정부재정지출의 상대적 비중 과대 및 국영기업소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여 왔다. 이에 대한 재정개혁방안으로는 정부재정자원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과감한 적자예산의 편성, 국영기업소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혁, 투명성 있는 조세제도로의 개편,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한 정부지출제도의 변혁, 금융의 역할과 개혁 등이 제시되었다.²²⁾ 『회계법』의 제정 등을 포함한 일련의 회계관리제도 개혁은 회계법제를 체계화하고, 재정부문의 단위주체들의 회계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1) 북한 헌법에 따르면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단체소유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파시킨다. 북한 헌법 제20~23조 참조.

22) 정민수, 앞의 논문, 183~184면 참조.

제 2 절 북한 회계법제의 변천과 구조

1. 북한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회계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의 발전은 회계의 발전을 유도하고 회계의 발전은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회계제도는 경제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는데, 즉,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에 따라 각각 상이한 표현방식으로 회계방식 및 회계제도를 채택하여 왔다.²³⁾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실패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으며, 북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정은 곧바로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북한의 회계법제 발전과정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도입 여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 사회주의적 회계제도기(1945~1983)
- ii)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기(1984~2002)
- iii) 병존기(2003~현재)

북한은 해방후 조선노동당 정권수립과 함께 소련의 경제제도를 본받아 소련의 생산수단인 전민소유제와 집단소유제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를 도입하였고, 회계시스템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구 소련의 회계이론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회계는 사회주의경제시스템 하에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경제시스템 하에서 회계는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계획의 일부로서 모든 기관과 기업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과 기업소는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기관·기업소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과 기업소를 포함하는 공통의 회계시스템이 나타난다.

23) 김확열, “사회주의에서 회계의 역할 -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회계제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2집, 2000. 2, 303면 참조.

북한에서 회계규정의 제정은 정부기관인 재정성이 맡고 있으며, 법적으로 제정되어 명문화된 표준회계규칙이나 회계처리규범으로는 고정자산관리규정,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표준양식 등이 있다. 이 중 북한의 명문화된 회계처리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회계규정을 들 수 있다.²⁴⁾ 1946년 8월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0호로 공포된 회계규정은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법규로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인 북한의 경제체제와 기업관리체제 하에서 법적으로 명문화된 회계규칙의 전형을 대표하며, 기관·기업소 등 모든 회계분야에 적용된다.

이후 북한은 1980년대 들어 중국의 개방 및 동구 공산권의 붕괴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자극을 받아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²⁵⁾ 그에 따라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5년 합영법시행규정과 외국인 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 시행규정, 합영회사 소득세법, 합영회사 소득세법시행규정 등 일련의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왔다. 그러나 투자 유치 실패 및 개방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기업법 및 외국인 합작법의 제정과 합영법 시행규정을 개정하였다.²⁶⁾

이 때까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는 합영법과 합영법 시행규정 및 외국인기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합영법을 근거로 한 합영회사 재정부기계산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부기계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1997년 새로운 부기계산규정인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을 제정하고, 1996년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새

24) 최상문, “북한의 회계제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제논총』 제4집, 1995, 29면 참조.

25) 김병호,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북한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통일원 교육홍보국, 『통일문제연구』 통권 22호, 1994, 133~163면 참조.

26) 최상문·김형진, “중국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을 중심으로”, 부산대 상과대학, 『부산상대론집』 68호, 1997. 6, 265면 참조.

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의 도입으로 그 동안 합병법 등에 산발적으로 명시되었던 회계처리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1) 사회주의적 회계제도기(1945~1983)

이 시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한지역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해 나갔던 북한정권 초기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이 경제개방을 시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합병법(1984. 9. 8 제정)을 제정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북한은 해방 직후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구 소련의 경제제도를 본받아 생산수단의 전민소유제와 집단소유제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를 도입하였고, 회계시스템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구 소련의 회계이론을 수용하였다.²⁷⁾

따라서 이 시기는 순수한 사회주의적 자립경제를 추구했던 기간으로서, 생산수단은 오로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있었고, 회계제도 또한 사회주의적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제정되고 시행된 법령은 그렇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국가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가장 기본적인 회계법규로서 『회계규정』(1946. 8. 12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0호)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법적으로 명문화된 대표적인 회계규범이었다. 그 외의 세부규정들은 회계감독 및 검사를 위한 『행정기관 회계검사에 관한 규정』(1948. 11.18 재정성 규칙 제2호), 『기업소경리검사에 관한 규정』(1948. 11. 30 재정성 규칙 제3호),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행정기관의 경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1949. 1. 17 내각 결정 제1호) 등이 있었다.²⁸⁾ 그러나 그 이후 제정된 회계관련 법령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27) 박정대, 김영훈, “한국과 북한의 회계기준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디지털경제연구』 제9권, 2004, 199면 참조.

28) 정경모, 최달곤 편, 『북한법령집』 제2권, 대륙연구소, 1990, 36~84면 참조.

(2)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기(1984~2002)

이 시기는 경제개방의 법적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합영법이 제정된 후부터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회계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2003. 3. 5 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1980년대 들어 중국의 개방 및 동구 공산권의 붕괴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합영법과 합작법을 제정하고, 라선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던 시기로서, 합영·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회계기준으로서 자본주의적 회계관리제도가 불가피하게 도입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합영법 제정 초기에 함께 제정되었던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이 시행되었고,²⁹⁾ 경제특구 설치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1995. 12. 4 정무원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1996. 7. 15 정무원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1996 7. 15 정무원결정으로 승인) 등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산발적으로 규정되었던 회계관련 법제들이 한층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3) 병존기(2003~현재)

이 시기는 2003년 최초의 회계관련 일반법인 『회계법』이 채택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킨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단행되었고,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이 앞다투어 설치되어 개혁개방조치가 본격화된 시기로서 독립채산제 등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

29) 이 당시에는 합영법 시행규정, 외국인 소득세법과 그 시행규정, 합영회사 소득세법 및 그 시행규정 등에도 회계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었다.

기업소 및 단체의 회계관리를 위한 법제와,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의 기업들에 적용할 자본주의적 회계관리법제들이 병존하고 있다.

북한 내의 기관, 기업소 및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법제로서 일반 법인 『회계법』이 제정된 후 그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할 하위 규정들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전 시기에 제정되었던 외국인투자과 관련된 회계관리규정들은 대체로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은행법 등에 존재하는 회계관련 규정들은 상당부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경제특구 중 특히 개성공업지구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법제의 근거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2003년 제정)을 두고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개성공업지구 기업 재정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2005. 9.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 등이 최근에 제정되었다.

2. 북한 회계법제의 구조

북한의 회계법제는 <표3>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자체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되는 법(회계관련 일반법제)과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으로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회계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회계법제가 이처럼 이원화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은 다시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와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등)로 세분될 수 있다.

먼저, 회계관련 일반법제는 북한 자체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즉,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법으로 『회계법』이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누고,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하고 있다(회계법 제3조). 또한 북한 회계법은 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그런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실상 국가의 소유와 다름이 없으며, 북한의 『재정법』(1995 제정, 2004 개정)에서도 제3장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예산회계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회계와 그 대상범위가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⁰⁾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근거법으로는 합영법(1984년 제정), 합작법(1992년 제정), 외국인기업법(1992년 제정) 및 외국투자은행법(1993년 제정) 등이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관련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외국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이 존재하며, 부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그리고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과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등을 두고 있다.³¹⁾

30) 학자들이 ‘정부회계’를 정의한 바에 따르면 경제주체이자 회계실체인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활동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정부의 행정관리 및 입법부, 재정연구가, 정치학자, 일반국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량적인 수단으로 표시하고 보고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정부 실체들의 재무적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를 회계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 분류, 요약, 평가, 해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형구,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방안”, 강원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과학연구』 제 29집, 2003, 346면 참조). 이 정의에 따르면 ‘정부회계’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공기업회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순수한 정부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공기업회계를 분리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정부부문의 회계를 ‘정부회계’라고 하고, 정부회계와 공기업회계를 더하여 공공부문의 회계라고 칭하였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

31) 합영법 제정 당시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부

북한의 경제개방 초기에는 경제특구, 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특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을 제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가장 먼저 설치된 경제특구였던 현재의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칭하고 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등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고, 각 경제특구별로 지역적 특성, 외국인투자 유인대상, 주요 목적사업 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공통된 법체계를 적용하려던 계획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합영법』, 『합작법』 등 일부 기본적인 법규를 제외하고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의 성격에 따라 각각 관련법과 시행규정을 정비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로 남한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특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반영한 회계법제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관련 법제의 근거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2003년 제정)을 두고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2005. 9.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의 회계관련 일반법제 중 『회계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로 크게 둘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중에서는 특히 최근에 정비된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를 다시 따로 떼어내 상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계산규정』이 합영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세칙』의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4, 280~306면 참조.

< 표 3 > 북한의 회계관련 법제

분 야	법 령 명	주요 제·개정 사항
일반법	회계법	- 2003. 3.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628호로 채택, 2003. 3. 26 최고인민회의 법령제14호로 승인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외국인투자법	-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7호로 채택 -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4호로 수정보충
	합작법	-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8호로 채택 -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4호로 수정보충 - 2004. 11. 3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합영법	- 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 2001. 5.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15호로 수정보충 - 2004. 11. 3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외국인기업법	-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9호로 채택 -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4호로 수정보충 - 2004. 11. 3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 1994. 3. 29 정무원 결정 제13호로 승인
	외국투자은행법	- 1993. 11.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42호로 채택 - 2002. 11. 7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 1994. 12. 28 정무원 결정 제48호로 승인
	외국인투자기업 부가계산규정	- 1995. 12. 4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분 야		법 령 명	주요 제·개정 사항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및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 2003. 4.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3호로 채택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 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개성공업지구 기업제정규정	- 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 2005. 9.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

제 3 절 중국 회계법제의 영향

1.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 구조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과정은 제1단계: 계획경제시기(1949~1978), 제2단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시기(1979~1991), 제3단계: 시장경제시기(1992~ 현재)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³²⁾ 회계법제의 발전은 시장경제의 발전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중국에서도 또한 이러한 단계에 따른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³⁾

32) 김동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회계제도의 발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연구소, 『국제경영론집』 제18집, 2003. 2, 21~22면 참조.

33)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회계법제 발전과정을 사회주의적 회계제도기,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기, 병존기 등 3단계로 나눈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북한의 발전 제3단계인 병존기는 중국의 제2단계인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는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의 11차 삼중전회의(중국공산당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1979년부터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에 나섰고, 1980년부터는 경제특구의 설치 등 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 회계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회계법』(1985.1.21 제6차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회의 채택, 1985.5.1 시행)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기업과 외국투자기업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중국 회계법』의 하부 시행규정이 제정된 것은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회 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강령을 채택한 이후이다. 즉, 1992년 11월 회계법 아래의 기본통칙인 『기업재무통칙』과 기본준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회계준칙』이 공포된 것이다.³⁴⁾

한편, 외국투자기업(외상투자기업)과 관련한 회계제도로는 경제개방초기부터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을 시작으로 하여 1985년 3월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재정부에서 제정·공표한 『중외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중국 내에 설립된 모든 합영기업에 적용되었으며 업종으로는 공업과 관광업의 실시규칙만 제정되었다. 이후 동년 4월 합영기업 중 업종이 공업인 기업의 『중외합자경영공업기업 회계과목 및 회계보표』가 제정·공표되었다.³⁵⁾ 이후 1992년 『중외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는 『외상투자기업 회계제도』, 『외상투자기업 회계과목 및 회계보표』와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으로 보완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중국기업 및 외국투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전체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준칙』, 『기업재무통칙』과 『업종별기업재무회계제도』가 1992년 11월 제정·공표되자 이들 법규를 외국투자기업에 전면적으로 적용하

34) 중국에서 국내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법제로는, 『기업재무통칙』과 『기업재무준칙』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회계법』만 공포되었을 뿐 기존의 사회주의적 구 회계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북한에서 『회계법』은 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하부 시행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구 회계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35) 최상문, 김형진, “중국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을 중심으로”, 부산대 상과대학, 『부산상대론집』 68호, 1997. 6, 264면 참조.

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1993년 종전의 『외상투자기업 회계제도』와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 『기업회계준칙』과 『기업재무통칙』의 내용을 문건을 통해 수정·보충하였다.³⁶⁾

그런데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면서³⁷⁾ 종전의 『외상투자기업 회계제도』는 폐지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기업도 중국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기업회계준칙』과 관련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중국 기업회계제도의 법규체계는 1985년에 공포된 『중국 회계법』(현행 법령은 1999.10.31 수정, 2000.7.1 시행)을 기본으로 하여³⁸⁾ 1992년 11월에 공포된 『기업회계준칙』³⁹⁾ 및 『기업재무통칙』 등 기본적인 회계법규들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한 『기업회계제도』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2. 북한 회계법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도입과정을 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또한 중국이 걸어온 길을

36) 이들 문건은 『외상투자기업의 신회계제도집행의 약간의 문제점 통지(關於貫徹執行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會計制度」若干會計處理的通知)』와 『외상투자기업 신기업재무제도집행 보충규정(外商投資企業執行新企業財務制度的補充規定)』, 그리고 『외상투자기업 재무통칙』집행관철과 업종별재무제도유관문제통지(關於外商投資企業執行「企業財務通則」和分行的企業財務制度有關問題的通知)』 및 『외상투자기업 신기업재무제도집행 보충규정에 관한 통지(關於引發「外商投資企業執行新企業財務制度的補充規定」的通知)』 등이다. 최상문, 김형건, 앞의 논문, 264~265면 참조.

37)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 2002년 12월 11일,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하였다.

38) 회계법의 시행을 보조하는 규정으로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2000.6.21)가 있으며, 이 조례는 재무보고의 정의, 구성, 재무제표의 편제, 재무정보의 대외제공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39) 기업회계준칙은 기본준칙과 구체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 회계협회 및 회계전문기관은 회계기준 제정, 해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고, 회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국무원 재정부서가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중국의 회계준칙은 행정명령 형식으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회계사회 등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제정하는 영미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여러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회계법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의 제정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1980년 경제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회계법』(1985)을 제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실질적인 경제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회계법』(2003년)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회계법의 제정 이후에 상당기간 국내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부 시행규정을 채택하지 못하고 기존의 구 회계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던 사정도 유사하다.

둘째, 경제개방과정에서 회계법제를 국내 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는 법제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법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2002년 WTO 가입 이전까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회계법규를 별도로 제정·시행해 왔으며, 북한도 현재 회계법을 비롯한 국내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되는 회계법제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회계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회계법의 목적에서 사회주의체제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회계는 정확한 재무정보의 제공으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회계법 제1조에서는 회계를 규범화하고 회계자료의 진실, 완전을 보장하며 경제관리와 재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향상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회계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회계법 제1조에서는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회계제도의 국가적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회계법 제8조는 회계대조계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보충규정 제정 등에 있어서 회계법과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⁴⁰⁾

40) 중국 회계법 제50조에서는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는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회계대조계산, 회계감독, 회계기구와 회계인원 및 회계사업관리에

에 근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북한에서도 회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회계업무에 대하여 국가의 관련 부서에 의한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회계법 제7조에 따라 국무원 재정부서가 전국의 회계업무를 주관하고, 일반회계원칙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회계법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회계법제는 중국의 회계법제를 기본적인 모델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적으로는 중국과 같이 국내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외국투자기업과 함께 일원적으로 적용되는 회계법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관하여 제정한 제도를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1) 중국에서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라는 것은 중국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되는 회계업무관리분야의 규범성 문건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 협의의 국가통일적 회계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주로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회계과목 및 재무제표 등의 내용과 작성에 관련된 규정이다.

둘째, 국가통일적 회계업무관리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회계작업조직 및 회계기구의 설치, 회계자료의 보존 등에 대한 구체적 규범이다.

셋째, 국가통일적 회계기구 및 회계인원관리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회계기구, 회계담당자의 행위, 회계인원의 선발과 관리분야의 제도에 대한 규범이다.

넷째, 국가통일적 회계감독제도이다. 즉, 회계감독의 목적, 기본원칙, 회계감독의 주체 및 객체 등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김확열, “중국 회계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7집 인문사회과학편, 2002. 8, 76~77면 참조.

제 3 장 북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제 1 절 『회계법』 제정의 의의

1. 회계법의 제정배경

북한은 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회계법』(총 5장 48개조)을 채택하고 동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승인하였다.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부문법의 제정과 수정, 보충은 최고인민회의가 하고,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1998년 헌법 이전에는 상설회의)가 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 중 중요한 부문법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91조 및 110조). 2004년에 발간된 북한법전에 수록된 법들을 기초로 통계를 내어본 결과, 헌법을 제외한 총 111건의 법 중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채택한 것이 10건,⁴²⁾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한 것이 101건이었다. 따라서 회계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한 후 최고인민회의가 다시 법령으로 승인한 것은 회계법이 그만큼 중요한 부문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1946. 8. 12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0호), 『행정기관 회계검사에 관한 규정』(1948. 11. 18 재정성 규칙 제2호), 『기업소경리검사에 관한 규정』(1948. 11. 30 재정성 규칙 제3호),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행정기관의 경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1949. 1. 17 내각 결정 제1호) 등⁴³⁾ 북한정권 초기 법

42) 건설법, 국토계획법, 사회주의로동법, 산림법, 어린이보양교양법, 인민경제계획법, 인민보건법, 지하자원법, 토지법, 환경보호법 등 10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참조.

43) 정경모, 최달근 편, 『북한법령집』 제2권, 대륙연구소, 1990, 36~84면 참조.

령들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너무 오래된 자료들이어서 그 이후의 변화나 실제 적용여부 등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한편, 북한의 회계제도와 관련한 변화된 내용이나 기업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에 포함된 여러 규정들과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편찬, 출판한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등을 통하여서도 간접적이거나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⁴⁴⁾ 하지만 회계제도와 관련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을 채택함으로써 비로소 회계제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회계법 채택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북한은 합병법, 외국인투자은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령상 회계관련용어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회계제도에 관한 인식 변화의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즉, 법문상의 ‘부기’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회계’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회계를 단순한 장부기입 즉, 부기로부터 보다 중요한 정책적인 과정으로 격상시킨 의미가 있다.⁴⁵⁾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채택된 북한의 회계법은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 이어 경제개혁의 단계로 접어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하여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용역을 최소화하고 유료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대하여 예산 배분 및 계획 능력을 복원하려고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 그리고 단체들에게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초과이익을 경영단위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7·1경제

44) 경제 관련 사전들의 해설을 통해 부기의 정의, 회계 관련 용어, 주요 부기장부 및 보고서에 대한 내용 등 북한의 회계체계 전반에 관해 어렵듯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45)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회계는 부기와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개념이다. 자산의 증감변화를 기록계산하는 데서 일정한 질서와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그 결과와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데로부터 생겨난 것이 부기이다. 부기는 매시기 이루어지는 거래계산을 전문하는 사무의 기술이다. 따라서 부기는 회계의 기술적 측면의 한 분야로 된다”고 한다. ‘회계’라는 용어가 단순한 기술적 의미만을 내포한 ‘부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251면, ‘회계’ 항목 참조.

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 그 해 7월말 재정성은 ‘재정사업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수 차례 실시하여 재정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관해 『민주조선』은 “생산경영활동에 실리보장원칙에서 돈에 의한 계산체계를 정확히 세우기 위한 새로운 부기계산방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⁴⁶⁾ 북한의 회계법은 이러한 북한의 환경변화에 따라, 각 경영단위 주체들간의 회계처리, 보고, 그리고 회계감사(북한에서는 회계 검사라고 함)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⁷⁾

2. 회계법 채택의 의의

북한이 회계법을 채택한 근본적인 목적은 제1조에서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천명한 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의 회계제도 개선과 그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극대화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진행될 급격한 내부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할 각 경제 주체들간의 회계 처리 및 보고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 회계관련 세부규정들과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그 상위법 개념으로 회계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내각은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새 회계방법을 공장 과 기업소 등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4년 3월 26일 내각은 박봉주 총리 주재로 ‘전원회의확대회의’를 개최하여 공장 및 기업소에서 새로운 회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계산체계를 재편성하고 재정 평가를 실속 있게 진행하여 국가 재정관리에 전환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⁴⁸⁾

46) 『민주조선』 2002년 8월 8일.

47) 김병호,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제1권 제3호, 2004. 12, 50면.

48) 『민주조선』, 2004년 3월 28일 참조.

북한 당국은 회계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소와 국가 재정의 건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국은 회계법 제정으로 기업소의 부채를 탕감한 후 새롭게 시작, 흑자를 내는 기업은 상여금을 받으나 적자 기업은 지배인이 책임을 지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분배의 평균주의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독립채산제의 적용이 점점 확대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축소되고 있다.

이처럼 회계법의 채택은 법, 규정 등 제도적 장치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경제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중국이 1985년 채택한 회계법(총 6장 31개조)⁴⁹⁾ 내용을 상당 부분 도입한 것으로, 북한 스스로도 회계법 채택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 지원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자평하고 있을 정도로 예산회계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며, 기관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예산 제약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고 독립채산제 완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 회계법의 특징

회계법의 특징으로는 기본적인 회계관련 정책·제도 및 해석에 대한 체제·절차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처리 및 보고 주체를 지정하여 명확히 하였고, 대상은 북한내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회계 작성 지침 등을 제시해 각 주체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계법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의 재정적 이익 보장’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운영 방침이 과거 생산량 중심에서 기업의 수익성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또 ‘각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재무회계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49) 현행의 중국 회계법은 1993년 및 1999년에 각각 개정된 법이며, 총 7장 52개조로 되어 있다.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향후 통계수치 공개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회계법에는 재무회계에 관한 법의 기본규정, 재무회계, 재무회계 분석, 재무회계 감사, 그리고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의 통제 및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회계법은 기본적인 회계 관련 정책과 제도, 해석에 대한 체제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과거에도 회계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법의 수준으로 제정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다.⁵⁰⁾

북한 회계법은 실제 회계절차나 회계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회계의 주체를 기관, 기업소, 단체로 구분하고 각 주체간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회계 관련 시행규정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회계와 관련된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이러한 점에서 회계법은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하부규정으로서 부기계산과 검증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그 규율대상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회계법에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고,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⁵²⁾ 앞으로 점차적으로 선진 회계기법의 도입과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접근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회계법의 내용과 분석

1. 회계법의 주요 내용

북한 회계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고 칭하고 있으며, 5개장 4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제도에 관한 일반법이자 회계 관련 시행규정들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

50) 김병호, 앞의 논문, 50면.

51) 김병호, 앞의 논문.

52) 회계법 제6조 및 제8조 참조.

다. 제1장은 회계법의 기본, 제2장은 회계계산, 제3장은 회계분석, 제4장은 회계검증, 그리고 제5장은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⁵³⁾

(1) 회계법의 기본

법 제1장에서는 회계법의 목적과 회계의 종류, 회계연도, 회계법의 적용대상, 그리고 회계전문인력의 교육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1) 회계법의 목적

법 제1조는 회계법의 목적에 관하여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회계법체계를 바로잡아 회계관리를 엄격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법의 제정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북한이 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본주의체제 하에 있는 사기업의 경우 회계기준 제정의 주된 목적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에 있으나, 이와는 달리 정부회계의 경우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⁵⁴⁾

이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서도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담보하기 위

53) 북한 회계법의 내용은 출처별로 일부 차이가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5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정부기업)에 관한 예산·회계를 규정한 『기업예산회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그의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다(법 제2조 후단). 여기서 제시된 통일성,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의 네 가지 요소는 회계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서⁵⁵⁾ 북한도 정권 초기부터 국가에 의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해 왔다.⁵⁶⁾ 그리고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의 원칙은 회계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들로서, 재정법 제6조에서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행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이나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고 한다.⁵⁷⁾ 우리나라의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재무회계의 질적 특성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55) 통일성, 즉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 확립은 중국 사회주의회계제도의 한 특징이기도 했다. 통일성은 재무제표의 서식, 회계과목과 재무제표 항목, 전체 회계과목의 계산내용 및 방법, 재무제표의 작성일 등 4가지 방면에서 표현되었다. 石人瑾, 根本光明, 『中國及び日本の會計監査制度』(東京: 中央大學出版部, 1996), 13면, 김학열, “사회주의에서 회계의 역할 -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회계제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2집 인문사회과학편, 2000. 2, 317~318면에서 재인용.

56)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기업을 관할하는 공통적인 회계시스템을 운영한다. 따라서 회계자료의 표준적 처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계정과목표, 회계보고서의 표준양식, 회계처리의 규칙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회계절차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이와 같은 회계의 표준화와 단순화는 회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단순화시켜, 회계담당자는 단순히 명문화된 회계규칙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전통적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인 북한의 경제체제와 기업관리체제에서 회계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회계규칙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한인구, “북한 회계시스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제29호, 1993, 77~78면,

57)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네 가지의 기본적 특성과 이를 제약하는 세 가지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기본적 특성으로는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이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는 2차적 속성으로 중요성을 들고 있으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2차적 속성으로 표현의 충실성, 실질우선, 중립성, 신중성, 완전성을 들고 있다. 또한 회계정보의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적시성, 효익(Benefit)과 원가간의 균형, 질적 특성간의 균형, 적정표시를 제시하고 있다. 박정대, 김영훈, “한국과 북한의 회계기준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디지털경제연구』 제9권, 2004, 185면 참조.

회계정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들고 있다.⁵⁸⁾

2) 회계의 종류

법 제3조 회계의 종류에 관하여 먼저 경영회계와 종합회계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경영회계는 법 제11조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재정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하는데,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정법 제25조).⁵⁹⁾

또한 지방회계는 지방재정기관(법 제12조), 부문회계는 해당 중앙기관(법 제13조), 금융회계는 은행기관과 보험기관(법 제14조), 그리고 중앙회계는 중앙재정지도기관(법 제15조)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8) 목적적합성이란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뢰성이란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충되는 질적 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 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의 추세분석과 기업실체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해서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실체간의 비교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전된 회계기준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 11. 4, 9~16면 참조.

59) 「재정법」 제30조에서는 이를 더욱 세분하여,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며,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3) 회계법의 적용대상

회계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회계를 하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 즉, 북한 헌법 제20조~제22조에 따라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이 그 적용대상으로서, 이것은 사회주의 소유관계의 특성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회계보다 그 적용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 속성상 ‘정부회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계법은 그 지역을 막론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들이 적용된다.

4) 기타 회계관리의 일반원칙

제1장에서는 이외에 제4조에서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돈계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며, 국가는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회계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 제5장(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법 제5조에서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특히 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회계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법 제11조에서 예산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⁶⁰⁾ 다만,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계를 위한 기준화폐를 『화폐유통법』에 의한 법정통화인 ‘조선원’으로 정한 것으로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주의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자국화폐에 의한 경제활동의 통제를 중요시하고 있고,⁶¹⁾ 북한도 최근까지 ‘원에 의한 통

60) 우리나라 『예산회계법』 제2조에서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1) 실물과 화폐간의 1:1 대응에 기초한 계획경제적 통제·관리를 구 소련에서는 ‘루블에

제'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²⁾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세를 결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조세관리기구(우리의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 예산회계법이나 기타 정부재정에 관한 법제,⁶³⁾ 혹은 이를 감독하는 별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주의국가들은 일원적 금융제도(mono-bank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모든 국영기업이 갖고 있는 은행계정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여기에 잉여가 발생하면 이를 정부의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즉, 기업이 납부하는 실질적인 조세⁶⁴⁾는 국영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해당기업의 계좌에서 같은 은행의 재정수입계정에 이체됨으로써 별도의 납부절차 없이 조세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조세 납부는 '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때 원활히 작동하며, 자금흐름을 위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 소련이나 북한 등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기업의 현금거래를 극단적으로 통제해 왔다.⁶⁵⁾ 그러나 기업

의한 통제'(ruble control: kontrol'ruble)라고 지칭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서도 이를 '원에 의한 통제'라고 지칭하여 왔다.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3rd edition*, (Harper and Row: New York, 1986). 고일동, "북한 재정위기의 본질과 세입관리체계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제6권 제9호, 2004. 10, 8~9면에서 재인용.

62)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은 '원에 의한 통제'에 관하여 "사회주의국가가 화폐적공간을 리용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적통제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원에 의한 통제는 상품화폐관계의 리용과 관련된 경제범주로서 우리 나라 민족화폐단위인 <원> 즉 화폐적공간을 리용하여 경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적 통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까.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기관, 기업소 경영활동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온갖 낭비현상을 없애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해나갈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463~1465면 '원에 의한 통제' 항목 참조.

63) 북한의 경우 1995년에 재정법, 1999년에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64) 북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명목상 조세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소의 경우 국가기업이득금(2002년 이전에 있었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통합), 협동단체의 경우 협동단체이득금(2002년 이전에 있었던 거래수입금과 협동단체이익금 통합)을 국가예산 수입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14면 참조.

65) 고일동, "북한 재정위기의 본질과 세입관리체계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

들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원에 의한 통제'가 기업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어 은행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자 기업간 물물교환 또는 현금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을 통해 계획경제의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또 다시 『회계법』의 제정을 통해 회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여 재정 수입의 증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6조에서는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재정부기⁶⁶⁾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각 기업소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전자계산실을 설치했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대부분 주산으로 계산하고 수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며,⁶⁷⁾ 회계 정보화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 제7조에서는 회계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회계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재정부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경제대학은 정준택원산경제대학⁶⁸⁾ 한 곳 밖에 없으며,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는 실무는 가르치지 않고 이론교육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⁶⁹⁾ 그리고 시장경제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으로는 노동당 간부 재교

한경제리뷰』 제6권 제9호, 2004. 10, 8~9면 참조.

66)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회계'를 '재정부기'라고 한다. 회계법 제정 이전에는 많은 법령에서도 재정부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67)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전 북한 재정부기와 지도원의 증언 참조.

http://www.ipa.re.kr/dbase/newsread.asp?number=2320&url=5&tna=ipa_db&dbname=ipa

68) 원산에 소재하며, 북한의 경제관리일군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고등교육기관이다. 1960년 9월 1일 원산경제대학 이름으로 개교, 1990년 정준택(1911-1973) 전 정무원(내각) 부총리의 경제적 업적을 기려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대학에는 계획경제, 자재공급 및 노동행정, 재정경제, 상업경영, 무역경제학부를 비롯한 여러 학부들과 수십 개의 강좌, 연구소, 박사원, 도서관, 출판소, 정보센터 등이 있다. 졸업생들에게는 준박사 후보자격증(졸업시험 4점 이상시)과 경제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9월 6일자 및 『연합뉴스』 2005년 5월 7일자 등 참조.

69)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와 지도원의 증언 참조.

육기관으로 인민경제대학이 있으며,⁷⁰⁾ 내각 무역성 대외협력추진위원회 산하의 나진기업학교에서는 주로 북한 무역부분의 관료와 기업의 주요 책임자급 인사, 일반학생들에게 시장경제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⁷¹⁾ 북한이 최근 들어 회계제도에 관한 관리들의 해외연수를 매우 강화하고 있는 것도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국제적 회계기준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⁷²⁾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⁷³⁾

법 제8조에서는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법 제8조의 규정과 유사하다.

70) 1946년 내각 직속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로 출발한 인민경제대학은 북한의 엘리트 행정간부를 양성하는 곳이다. 국제관계대학에서 길러내는 대외 및 대남 부문 간부를 제외한 경제와 사회 등 거의 모든 행정 부문의 고급 간부를 배출한다.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관할하는 이 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군(郡)급 이상 행정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입학할 수 있다. 재학생이 약 1000명 정도인 이 대학은 국가계획학부, 재정학부, 통계학부, 상업학부, 공업학부, 농업학부, 검찰학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역학부도 있었으나 1990년 대 초에 국제관계대학으로 이관됐다. 기본 교육 과정은 4년제지만 6개월 과정과 한달 과정도 개설돼 있다. 인민경제대학의 기본 교과목은 정치경제학, 국제금융학, 외국어(영어와 러시아 중 택일) 등이고 각 학부 별로 재정학과 통계학 등 전공 교과목들이 다수 있다. 국제금융학은 이 대학이 자본주의의 금융시스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과목이다.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4&res_id=17381&page=3 참조.

71) 나진기업학교는 1998년 UNDP의 협조로 나진·선봉지구에 설립되었다. 4년제의 해운학부, 경영학부, 경제학부가 있으며, 6개월간의 특수교육학부가 있다. 특수교육학부에서는 회계학, 부동산학, 전산학, 비즈니스영어, 비즈니스중국어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호주국립대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병수,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향후과제 - 중국 및 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5년 10월호, 2005. 10, 11면 참조.

72) 1998년 2월엔 나진·선봉지구내 나진기업학교 교원 14명이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기업회계, 재정, 경영, 재무관리 등을 학습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무역성, 재정성, 민정련 등 북한관료들 다수가 각 1주일간씩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심양에서 일본 ERINA와 중국 요녕성사회과학원 공동으로 개설한 『중국 회계법 및 회계원칙 강의』(2004년 7월)와 『중국 회계법 및 회계사무소 운영규정』(2005년 8월)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윤병수, 앞의 논문, 12면 및 32면의 <표> 참조.

73)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명철,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실태와 남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5~62면 및 윤병수, 앞의 논문, 9~13면 참조.

(2) 회계계산

법 제2장에서는 경상계산과 결산 등 회계계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회계계산의 정의

법 제10조에서는 회계계산은 자금의 변동을 일상적으로 기록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이 때문에 각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산단계에 따르는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계산에 관한 이같은 정의는 유용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의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개념보다 단순한 부기(book-keeping)의 개념에 더 가깝다. 북한 회계법에서의 회계계산은 부기를 하고 결산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회계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를 살펴보고,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특히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7·1조치에서 허용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 국가, 그리고 그 하부조직들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계제도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회계법 제2장은 주로 회계를 통한 조직의 통제가 주요 관심대상이기 때문에 결산과 결산 보고체계가 주된 내용이며, 이러한 결산보고서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북한회계법은 상급기관의 감시기능을 중요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⁷⁴⁾

2) 회계주체별 회계계산 업무

회계계산 업무의 범위는 회계계산의 주체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경영회계계산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는데, 고정재산, 저장품, 노동보수, 비용지출과 원가, 생산물, 상품,

74) 김병호, 앞의 논문, 52면 참조.

물자, 화폐재산, 채권채무, 자금수입과 지출, 경영수입과 지출 및 분배,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지방회계계산은 지방재정기관이 하며, 지방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법 제12조).

부문의회계계산은 해당 중앙기관이 하며, 해당 중앙기관은 부문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법 제13조).

금융회계계산은 은행기관과 보험기관이 하며, 은행기관은 무현금결제 업무, 신용업무, 발권 및 현금출납업무, 대외결제 및 신용업무에 대하여, 보험기관은 보험재정상태와 보험업무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중앙회계계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⁷⁵⁾이 하며, 국가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 외화수지, 국제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⁷⁶⁾

3) 경상계산

회계계산은 경상계산과 결산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계산은 경제거래가 생길 때마다, 결산은 주기에 따라 한다(법 제16조). 경상계산을 경제거래가 생길 때마다 한다고 규정한 것은 발생주의⁷⁷⁾ 회계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와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하는데, 회계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즉, 내각 재정성)이 하도록 되어있다(법 제17조).

법 제18조에서는 경상계산은 시초서류 또는 아래 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하고,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경제거래내용과 맞지 않는

75) 내각의 재정성(구 재정부)을 말한다.

76) 회계법 제15조.

77) 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accrual basis accounting』의 번역어로서 지금까지 ‘발생주의 회계’라는 용어가 통용되어 왔으나 회계학자 가운데는 ‘발생기준 회계’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많다(이종운, “정부회계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감사원, 『감사』 통권 제81호, 2004. 1, 46면 각주 참조).

시초서류, 회계보고문건은 경상계산의 기초자료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여, 거래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적법한 서류와 문건의 작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 제19조에서는 경상계산방법에 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을 종합계산과 세분계산, 시순식계산, 체계식계산, 현물계산과 금액계산을 결합하여 하여야 하며, 경상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이 조항을 법 제16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공공부문의 회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⁷⁹⁾ 이는 아직까지 ‘현금주의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보다 앞선 제도인 것으로 생각된다.⁸⁰⁾ 북한정부가 공공부문 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여 재정수입을 높이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⁸¹⁾

법 제20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상계산결과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상계산결과검토는 시순식계산자료와 체계식계산자료, 종합

78)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부기경상계산은 시순적계산과 종합계산, 분석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계산체계로 진행된다. 시순적계산은 거래들을 발생순서에 따라 등록하는 방법으로, 종합계산은 거래들을 계산자리체계에 따라 금액으로 복식기입하는 방법으로, 분석계산은 종합계산대상을 구체적으로 더 가른 분석계산자리체계에 따라 수량, 금액 계산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603면 ‘부기장부조직’ 항목 참조.

79) 북한에서 부기는 적용분야에 따라 기업소부기, 기관부기 및 가계부기로 구분되고, 농업협동화시기에 단식부기의 한 형태인 약식부기와 간이식부기가 협동농장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부기관 및 기업소에서는 모두 복식부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상문, “북한의 회계제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제논총』 제4집, 1995. 5, 30면 참조.

80) 우리 나라에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지방재정법 개정예에 따라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되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혁신과제로서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2008년 이후에나 『정부회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연합뉴스』, 2005년 7월 6일자 참조).

81) 현재 회계법의 규율대상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하는 중앙회계, 은행기관과 보험기관이 하는 금융회계, 해당 중앙기관이 하는 부문회계, 지방재정기관이 하는 지방회계,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는 경영회계 등 공공부문회계의 전 부문을 망라하고 있으나, 이같은 전 부문에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는지, 아니면 경영회계와 금융회계 등 일부 부문에만 도입한다는 의미인지는 불확실하다.

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틀린 자료는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계산의 정확성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4) 회계결산

회계결산은 경상계산자료에 기초하여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에 앞서 빠진 거래를 등록하고 미결거래를 청산하며 재산실사를 하여야 한다(법 제21조)고 규정하여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결산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에 대해 회계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⁸²⁾ 따라서 회계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검증은 바로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다.

회계결산서 중에서 경영회계결산서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지방회계결산서는 상급기관에, 부문회계결산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에, 금융회계결산서는 해당 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그리고 중앙회계결산서는 내각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⁸³⁾

그리고 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⁸⁴⁾을 받아야 하고, 비준받지 않은 회계결산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법 제24조).

82) 회계법 제11조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회계계산을 하도록 되어있다.

83) 전 북한 재정부기와 지도원에 의하면 회계법 제정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소가 속하는 내각의 해당 중앙기관 재정국이 상급기관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기업소가 위치해 있는 시·도 등 지역의 재정국에도 보고를 해야 하며 구역·군 단위의 재정부 기과에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는 월별, 분기별, 연말 등 결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와 지도원의 증언 참조.

84)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 단위책임자나 일정한 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555면 ‘비준’ 항목 참조.

(3) 회계분석

법 제3장에서는 각 회계분석주기별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회계분석의 절차와 그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계분석은 우리 나라에서 기업들이 하는 경영성과분석이나, 정부기관들의 경영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회계분석을 바로 하는 것은 경제실태를 파악하고 재정적 타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법 제25조), 회계분석주기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3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의 구체적인 검토사항으로서 자금보장과 이용의 효과성, 경영수지, 예산집행정형, 화폐유통, 외화수지, 국제수지 같은 것을 분석하여야 한다(법 제26조). 그리고 회계분석은 회계결산서에 기초하여 하고, 필요한 경우 경상계산자료, 계획 및 통계자료, 업무계산자료, 기술경제적 기준자료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다(법 제27조). 또한 회계분석은 대비분석, 분류분석, 연관분석의 방법으로 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석목적에 맞게 그 수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이 끝나면 분석자료를 종합하여야 하며, 그 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재정적 타산과 생산 및 재정총화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즉, 각 기별 회계결산 및 회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경영평가를 하고 이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생산계획 수립에 반영하며, 최종적으로는 재정총화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⁸⁵⁾

회계분석에 관한 법 제3장의 규정들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지도로 진행된 통제체제로부터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라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고 하부조직은 시

85)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재정총화'는 "국가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에서 일정한 기간의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말한다(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96면 참조).

달받은 경제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였다. 그런데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이러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체제에서 단위 기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회계분석’은 비록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재정총화를 위한 중간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각 단위 기관이 회계 및 통계자료 등의 사용을 통하여 경영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자율적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설정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분석절차를 통해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어느 정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회계검증

법 제4장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회계검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회계검증대상과 회계검증기관

회계검증은 경영회계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법 제31조). 즉, 회계검증은 법 제11조에 따라 경영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거치는 과정이다.⁸⁶⁾

그런데 여기서 법 제31조 후단의 ‘회계검증은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는 조문의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여, 회계검증을 실시한다는 의미인지, 받는다는 의미인지 언뜻 알기 어렵다. 이것은 법 제33조 전단에서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이 한다’고 재차 규정한 것과 관련지어 보면 더욱 더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진다.

이 조항은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은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고,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

86)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법』 제30조에서는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며,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관'이 한다고 이해하는 것, 둘째,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바로 회계검증을 받는 기관이라고 보는 것, 셋째,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바로 '회계검증기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북한법전⁸⁷⁾에 실려 있는 『회계법』이 아닌 다른 자료들에 게재된 『회계법』 조문⁸⁸⁾을 참조한 바 법 제31조가 “재무회계 감사는 정확성 및 합리성 확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재무회계 감사는 지방 재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의해 실시된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해당 기관’은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아⁸⁹⁾ 세 번째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⁹⁰⁾ 아무튼 이러한 점은 법령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북한 법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발전되고는 있지만 법체계 및 법문 구성에 있어

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88)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5, 298~300면 및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index.jsp>)의 북한 회계법 자료 참조. 이곳에 게재된 『회계법』은 앞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에 게재된 『회계법』과 상당히 다른 법문을 담고 있는데, 북한식 법령용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영어 또는 일본어 등 다른 언어로 된 원문을 번역하여 게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89)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방지 합의서』 부록의 용어비교 참조.

90) 첫 번째 의견은, 이 조항을, 법 제23조제1호에서 경영회계결산서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4조에서 회계결산서를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은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고,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이 한다고 이해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경우 왜 법 제23조제1호에서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제31조에서는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해명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뒤의 조문인 제34조 및 제37조에서도 회계검증을 받는 기관이 계속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라고 일관되게 표현되는 점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의견은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바로 ‘회계검증기관’이라고 본다면 ‘해당 기관’의 의미상 회계검증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증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모호한 점이 있으나, 회계법 제23조제1호와 같이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으로 해석하거나 ‘해당 기관’을 ‘(다른 곳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검증을 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으로 유추해석한다면 이 의견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 즉,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 31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며,⁹¹⁾ 필요한 경우 현지에 나가 할 수도 있다(법 제33조).

2) 회계검증절차

회계검증은 경영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하고, 검증에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회계서류도 볼 수 있다(법 제32조).

회계검증은 회계검증대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법 제34조에 따르면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간에 회계검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은 회계검증기관이 정한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검증하여야 하며, 회계검증은 회계결산서의 표와 자료의 정확성, 연관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35조). 그리고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결과를 제때에 확인하여 주어야 하며, 검증과정에 발견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치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주어야 한다(법 제36조).

회계검증주기는 분기, 반년, 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에 따라 주기밖에도 회계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7조). 그리고 회계검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하며, 검증요금을 정하는 것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법 제38조). 이처럼 검증요금을 피검증기관이 내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들의 회계감사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⁹²⁾

91)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을 회계법 제23조제1호와 같이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으로 해석하거나 ‘해당 기관’을 ‘다른 곳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검증을 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바로 회계법 제4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당 감독 통제기관’과도 동일한 결과가 될 것이다.

92) 김병호, 앞의 논문, 53면 참조.

3) 회계검증제도의 성격

앞에서는 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검증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규정한 회계검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에 대해 실시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와도 다르고,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원의 회계검사(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와도 다른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⁹³⁾

회계검증제도는 자본주의사회의 공인회계사제도와 비교할 때 경영회계결산서에 대해 표와 자료의 정확성, 연관성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증에 필요한 경우 현지에 나가서 회계장부, 회계서류도 볼 수 있으며, 검증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해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주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요금은 피검사기관이 지불하도록 하는 등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그러나 회계검증기관이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으로 되어 있어 정부기관인지, 제3의 독립된 기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⁹⁴⁾ 회계검증주기를 분기, 반년, 연간으로 하도록 한 것⁹⁵⁾ 등에서 차이가 있다.

93) 회계법이 제정되기 전의 회계감사에 대하여 전 북한 재정부기와 지도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감사는 기업소 자체로 하지 않고 담당 은행이나 검찰소에서 감사를 나온다. 분기별로 한번씩 은행에서 감사를 나오고 검찰소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나온다. 은행은 기업소와 직접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현물과 기업의 재산이 맞는지 장부를 일일이 확인한다. 기업소마다 현금보유 한도가 있는데 은행 감사에서 기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초과되어 있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초과된 금액을 회수해 간다. 검찰소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중앙검찰소에서 검열 지시가 떨어지면 모든 기업소의 재정부기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감사가 나오면 기간은 보통 보름정도 걸리며 조그만 문제라도 제기되면 한 달이나 두 달 이상도 감사를 받게 된다. 기업소에 대한 감사는 재정부기와 외에도 영업과나 자재과 등과 모든 장부를 삼각으로 대조해보고 창고의 현물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며 재정부기를 관할하는 상급기관에 보고된 내용도 모두 검열한다. 이렇듯 기업소에 대한 감사는 재정부기와 외에도 연관 부서·기관들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에선 회계부정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감사는 사전예고 없이 나오기 때문에 재정부기와 지도원들은 항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다.”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와 지도원의 증언 참조.

94) 『외국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독립된 ‘부기검증사무소’에 의하여 부기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7조 내지 제13조 참조.

9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회사는 기업규모에 따라 반기보고

회계검증제도는 또한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감사원에서 하는 회계검사나 또는 미국의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의 일반회계검사와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⁹⁶⁾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사원 회계검사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공공부문의 회계에 대한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회계검사라는 점, 경영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표와 자료의 정확성, 연관성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증에 필요한 경우 현지에 나가서 회계장부, 회계서류도 볼 수 있으며, 검증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해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주는 점 등은 유사하나, 회계검증을 신청하여 실시하고, 분기, 반년, 연간을 회계검증주기로 하며, 회계검증요금을 지불하는 점 등은 차이가 있다.

어떻든 회계검증은 모든 공공부문의 회계단위가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대해서만 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감사원 회계검사제도와 같은 제도는 북한의 재정법상 ‘재정검열제도’(재정법 제52조)로 따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자본주의사회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제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법 제31조 및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관’이란 제33조 내지 제36조에서는 ‘회계검증기관’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독립된 ‘회계검증사무소’에 의한 회계검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⁹⁷⁾ 회계검증제도는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회계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서나 분기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감사의견을 갈음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96) 김병호, 앞의 논문, 53면 참조.

97)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참조.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검증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법 제5장에서는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관리의 다른 부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하고 있어 회계법 제정의 취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1)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

법 제39조에 따르면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내각의 재정성을 말한다)이 하며,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고 한다.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법 제2조에서 회계관리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거론한 '통일성'과 같은 취지로 단일한 회계기준에 의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계산, 분석, 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요해하고 바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0조).⁹⁸⁾

2) 회계문건의 보존

법 제41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문건을 편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문건은 화재, 자연재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문서고나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북한 재정부기과 지도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모든 장부를 대체로 10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 10년이 지나면 폐기한다.⁹⁹⁾

9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검증을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경영회계를 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99) 장부를 오래 보관하기 때문에 장부의 내용이 변하지 않게 모두 먹으로 써야 하고, 장부엔 볼펜도 검은색만 쓰게 되어 있다. 장부와 분기표는 장부만을 보관하는 창고에 10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연도별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10년이 지난 장부들은 1년에 한번씩 폐기한다. 통계수치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도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폐기할 장부를 따로 포장한 다음 지정된 수매소에서 다른 파지와 따로 폐기를 하게 된다.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과 지도원의 증언 참조.

3) 회계사업의 자격

회계사업은 해당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일군을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42조).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사업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회계일군은 회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계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43조). 이러한 회계일군의 자격, 회계사업조건, 그리고 회계사업에 대한 자료요구권이나 토의모임 참가 등을 규정은 모두 회계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치로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재정부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경제대학은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이 있다. 경제대학은 경제관리일군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며,¹⁰⁰⁾ 경제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장과 함께 ‘경제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급수는 6급을 받게 된다.¹⁰¹⁾ 경제사 자격증은 경제대학을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받게 되지만 급수는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야 한다. 급수가 오르면 자신의 지위와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다. 급수시험은 혁명역사, 전공, 원서번역(영어) 등을 보게 된다. 탈락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합격한다. 급수시험은 3년마다 한번씩 볼 수 있다. 급수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승급시험은 국가자격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시험 전에 공고를 하고 지역별로 신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험을 보게 된다.¹⁰²⁾

100) 교육과정은 5년 6개월이며, 이는 경제대학이 경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이기 때문이다. 경제대학 안에는 계획경제학부, 재정경제학부, 자재공급 및 노동행정학부, 상업경영학부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계획작성으로부터 돈 계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재들을 양성해내고 있다.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 지도원의 증언 참조.

101) 북한의 ‘경제사’는 한국의 공인회계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특수대학인 경제대학에서 부기를 전공하고 졸업하면 경제사 자격을 받는다.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다. 각 도(직할시)에는 재정부기양성소가 있으며 여기를 졸업하면 준경제사 자격이 주어진다. 경제사는 3급이상 기업소(종업원 100명 이상)의 책임부기지도원으로 배치받게 되며, 준경제사는 모든 기업소의 부기지도원으로 일하게 된다.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2&res_id=12022&page=3 참조.

102)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과 지도원의 증언 참조.

북한에는 모든 기업소마다 재정부기과는 다 조직되어 있다. 재정부기과에는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원, 기계설비·건물 등의 고정재산 지도원, 기업소 건설 대보소 등을 담당하는 지도원, 채권·채무 담당 지도원, 돈 유통을 담당하는 유동재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같은 지도원이라도 업무가 각기 다르다.¹⁰³⁾

지도원들 밑으로 기업소 각 직장마다 노력관리, 생활비 계산을 담당하는 부기원, 통계원, 경리원 등이 있다. 일반 부기원, 통계원, 경리원은 6개월 내지 1년 과정의 재정부기양성소를 통해 양성한다. 이들이 통계를 내거나 계산한 장부들이 재정부기과로 올라오면 지도원들은 그것을 종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도원부터는 간부에 속하는데, 지도원들은 기업소의 재정부기과 사무실에 모여 업무를 본다. 지도원들은 기업소 전체와 모든 직장들의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¹⁰⁴⁾

그리고 기업소의 하부 직장마다 통계, 부기, 경리 업무를 처리하는 부기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단순 통계와 계산 업무만을 담당한다. 특급기업소엔 보통 30개가 넘는 하부 직장들이 있는데, 부기원들은 각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들을 매일 계산해서 월말에 재정부기과 사무실에 와서 정산한다. 부기원은 지도원과 달리 전문대학 졸업자가 아니고 숙성과정의 양성소를 거쳐 실무적인 일만 담당하는데,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승진하기도 쉽지 않다.¹⁰⁵⁾

법 제44조에 의하면 회계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는 회계일군이 임명, 해임, 동원, 병치료 같은 원인으로 회계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며, 인계인수는 제3자의 입회 아래서 서면으로 한다.

103)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과 지도원의 증언 참조.

104) 그러나 종업원 40~50명 정도의 규모가 작은 3급이나 4급기업소의 재정부기과에는 보통 과장 한 명이 간부급이고 그 밑에는 일반 부기원 한 명 정도를 두고 있다. 이런 경우 기업소의 종업원 수도 적고 은행 예금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장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특급기업소의 재정부기과는 과장 밑에 여러 명의 지도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지도원마다 분담되어 있다. 지도원 각자의 업무를 월, 분기, 년 단위로 결산하면 이에 대한 종합결산은 종합지도원이 처리한다.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과 지도원의 증언 참조.

105) 앞의 전 북한 재정부기과 지도원의 증언 참조.

4)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는데,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5조).

또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법 제46조),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법 제47조).

또한 회계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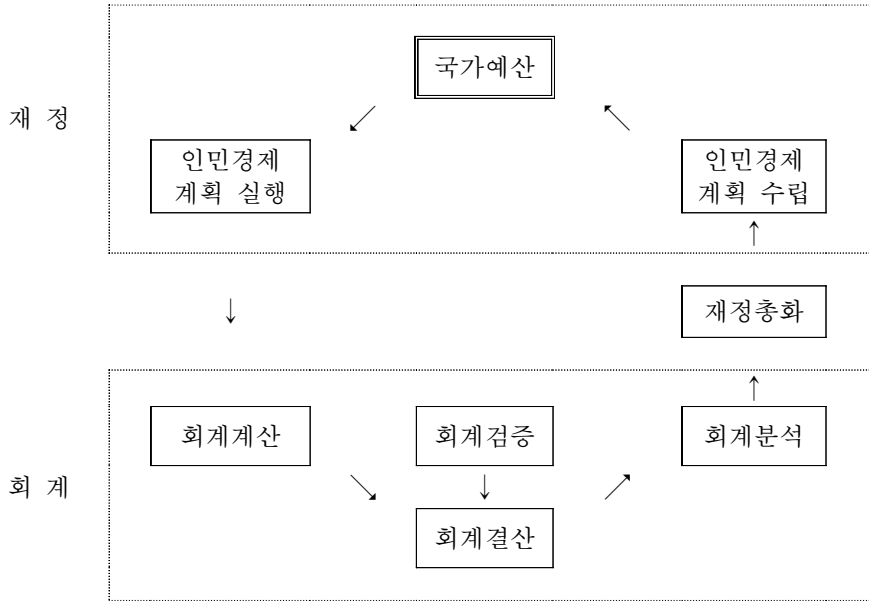
이러한 감독통제 규정들은 회계관리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적 실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정법과 회계법의 연계성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는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법 상에도 회계와 관련한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들은 회계법 상의 규정들과 서로 맞물려 피드백되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재정에 속하는 과정은 『재정법』과 『인민경제계획법』에 의해, 회계에 속하는 과정은 『회계법』에 의해 주로 규율되게 된다.¹⁰⁶⁾

106) 재정총화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재정총화는 곧, 재정과 회계를 연결시켜 주는 연계고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재정과 회계간의 순환과정



여기서는 <표4>와 같이 북한의 재정법과 회계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연계관계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첫째, 두 법의 제정목적상 회계는 재정관리의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북한의 재정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재정법 제 14조)고 강조하고 있고,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므로 재정관리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정법 제24조). 인민경제계획실행은 『인민경제계획법』을 통해 규제되고, 경영활동은 『회계법』을 통해 규제되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재정이 유지·관리되고 있다. 회계법의 제정목적에서도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은 실행할 수 없다(재정법 제26조).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하여야 한다(재정법 제27조). 또한 재정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하며,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계획같은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재정법 제28조)고 규정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재정계획을 세워 이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둘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계법 제11조에서도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회계계산을 하도록 하고, 경영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회계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법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하는데, 즉,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재정법 제25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며,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정법 제30조).

셋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처리기준에 상당하는 내용들 중 일부가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자금을 생산경영활동, 인민적 시책 같은 목적에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고 전제하면서,¹⁰⁷⁾ 유동자금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구입에 쓰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동자금 회전을 촉진시켜 자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재정법 제

107) 재정법 제29조

31조), 원가와 순소득은 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켜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 순소득을 늘여야 한다는 점(재정법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에서 국가납부몫¹⁰⁸⁾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 계획기간에 채 쓰지 못한 생산확대기금과 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같은 자체로 쓰게 된 자금은 국가예산에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재정법 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정법에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⁹⁾

넷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결산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토론하는 과정으로 재정총화¹¹⁰⁾라는 과정을 두어 회계단위의 재정에 대한 성과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10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의 조세와 같은 것으로, 북한의 경우 공공 부문에서 명목상 조세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소의 경우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의 경우 협동단체이득금을 국가예산 수입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14면 참조.

109) 이외에도 국가예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조문들이 있다.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범위에서 재정계획에 맞물려 생산확대기금에서 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쓸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의 공급은 건설주의 질검사와 건설감독기관의 공사실적확인에 따라 한다. 계획에 없는 공사에 대한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쓸 수 없다(재정법 제32조).

국가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며 그 밖의 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새기술도입에 의하여 조성되는 새기술도입금과 생산확대기금, 기업소기금에서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다(재정법 제33조).

110)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재정총화’는 “국가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에서 일정한 기간의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라고 하면서, “재정총화는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 일정한 기간별로 돈을 번 것은 얼마이고, 쓴 것은 얼마인데 국가에 리익을 준 것은 얼마이고, 손실을 준 것은 얼마이라는 것을 분석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정예산집행에서 나타난 우결함과 그 원인을 밝히며 개선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갈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96면 참조.

우선 재정총화를 바로하는 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재정법 제40조)고 규정하여 재정총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법」 제4장에 따르면 재정총화는 국가예산, 중앙예산, 지방예산, 기관·기업소·단체회계, 직장, 작업반 등 각 단위에서, 일, 순, 월, 분기, 반년, 연간 등 다양한 주기별로 행해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되는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하며,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금기금, 국가에 이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도록 하고 있다.¹¹¹⁾ 이는 자본주의사회의 기업들이 행하는 분임토의, 경영검토회의, 그리고 주주총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다섯째, 회계 및 재정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는 재정법과 회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회계법 상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결산에 대한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회계법 제24조), 회계분석(회계법 제3장), 회계검증(회계법 제4장)뿐만 아니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통일적 장악과 지도(회계법 제39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의한 감독(회계법 제40조),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의한 감독통제(회계법 제4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법 상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각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총화(재정법 제4장)뿐만 아니라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의한 통일적 지도(재정법 제49조), ‘해당 재정기관’에 의한 지도(재정법 제50조),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의한 재정검열(재정법 제52조),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에 의한 재정통제(재정법 제53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같은 기관에 의한 같은 방식의 통제형태도 있겠으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가 제도적으로 너무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그 만큼 회계에 대한 통제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대라는 목표가 절실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111) 재정법 제41조~제47조 참조.

〈 표 4 〉 재정법 상 회계관련 조문과 회계법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목 적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기본원칙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한다.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 2 조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의 책 무	제 7 조 국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 조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돈계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제협력	제 8 조 국가는 재정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8 조 국가는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회계연도	제11조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한다. 예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5 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재정총화	<p>제 6 조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행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재정총화</p> <p>제40조 재정총화를 바로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p> <p>제41조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p> <p>제42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분기, 반년, 연간 총화는 내각에서, 중앙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지방정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연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p>	<p>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이 끝나면 분석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재정적 타산과 생산 및 재정총화자료로 리용하여야 한다.</p>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p>제43조 일 생산 및 재정총화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 생산 및 재정총화를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한다.</p> <p>제44조 순별 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는 직장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별 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p> <p>제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금기금, 국가에 리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p> <p>제46조 재정총화결과는 공개한다. 재정총화에 대한 공개는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하고 직장, 작업반에서도 한다. 재정총화결과에 대한 공시는 월에 1차 한다.</p>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무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	-

제 3 장 북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p>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운영</p>	<p>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한다.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p> <p>제30조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p>	<p>-</p>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p>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계획</p>	<p>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은 실행할수 없다.</p> <p>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하여야 한다.</p> <p>제28조 재정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계획같은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p> <p>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자금을 생산경영활동, 인민적시책 같은 목적에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p> <p>제31조 류동자금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구입에 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류동자금회전을 촉진시켜 자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p>	<p>-</p>

제 3 장 북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p>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관리</p>	<p>제32조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 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 예산범위에서 재정계획에 맞 물려 생산확대기금에서 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쓸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의 공급은 건설주의 질 검사와 건설감독기관의 공사 실적확인에 따라 한다. 계획에 없는 공사에 대한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쓸수 없다.</p> <p>제33조 국가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며 그밖의 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새기술도입에 의하여 조성되는 새기술도입금과 생산확대기금, 기업소기금에서 실정에 맞게 쓸수 있다.</p> <p>제34조 원가와 순소득은 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 지표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 순소득을 늘여야 한다.</p>	<p>-</p>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p>제3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이나 요금 같은 것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p> <p>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에서 국가납부몫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수 있다. 계획기간에 채 쓰지 못한 생산확대기금과 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같은 자체로 쓰게된 자금은 국가예산에 동원하지 않는다.</p> <p>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수입금이나 여유자금을 국가예산에 바쳐야 한다.</p>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책임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
회계 문건의 작성과 보존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계산은 자금의 변동을 일상적으로 기록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산단계에 따르는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북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p>제18조 경상계산은 시초서류 또는 아래 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경제거래내용과 맞지 않는 시초서류, 회계보고문건은 경상계산의 기초자료로 쓸수 없다.</p> <p>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을 종합계산과 세분계산, 시순식계산, 체계식계산, 현물계산과 금액계산을 결합하여 하여야 한다. 경상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p> <p>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상계산결과검토는 시순식계산자료와 체계식계산자료,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틀린 자료는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쳐야 한다.</p> <p>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문건을 편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화재, 자연재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문서고나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p>
결 산	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재정회계결산서를 만들어 회계검정을 받은 다음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정회계결산서	제22조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p>는 회계검증과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p>	<p>제23조 회계결산서의 제출은 다음의 기관에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회계결산서는 해당 지방 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2. 지방회계결산서는 상급기관에 한다. 3. 부문회계결산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에 한다. 4. 금융회계결산서는 해당 재정 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5. 중앙회계결산서는 내각에 한다. <p>제24조 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비준받지 않은 회계결산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p>
<p>지도통제</p>	<p>제49조 재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재정 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p> <p>제50조 해당 재정기관은 아래 단위 또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문제를 해당재정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며 재정 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통계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p>	<p>제39조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 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하고 지도하여야 한다.</p> <p>제40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계산, 분석, 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5조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p>

제 3 장 북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재정검열	<p>제52조 재정검열은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p>	-
재정통제	<p>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통제에 생산자대중이 널리 참가할 수 있게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의 결정 집행정형은 해당 재정기관이 장악한다.</p> <p>제5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업무계산, 회계계산 같은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p>	-
법적 책임	<p>제55조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p>	<p>제46조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p> <p>제47조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p>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제48조 회계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3 절 북한 회계법의 평가와 과제

북한은 회계법의 제정을 계기로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회계관리의 투명화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으며, 그 시도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이고,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회계법 도입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조치 중 하나로서 재정위기의 극복을 목표로 하였다. 즉, 경제관리방식을 전환하여 국가가 모든 경제단위들의 재정계획을 직접 관리하던 방식에서 독립채산제 등 자율적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대신 회계법 제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번 수입’ 중에서 국가납부금¹¹²⁾으로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회계법에는 공공부문의 회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직 실제로 전 국가기관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계단위에서만 실시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을 포함한 전 기관, 기업소, 단체

112) 재정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납부몹’이라고 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조세와 같은 것으로, 기업소의 경우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의 경우 협동단체이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회계법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천명함으로써 전 공공부문의 회계로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통해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더욱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의 회계법은 동시에 몇 가지 과제도 남겨 놓고 있다.

첫째, 회계법의 제정에 따른 시행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회계법에는 회계제도의 목적과 적용범위, 회계계산, 회계분석 및 회계검증,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그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계법에 부합하는 하부규정들이 조속히 제정되어 회계법체계를 보다 정치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도통제적 회계제도의 개선 필요성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 및 재정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는 재정법과 회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감독통제기관과 통제수단이 난립하게 되면 결국 시간, 인력 및 경제적 낭비로 인해 비효율성만 더욱 노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회계 및 재정에 대한 통제는 회계검증 및 회계감찰 정도로 축소하고, ‘재정총화’, 는 ‘회계분석’,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 등 세 가지는 ‘재정총화’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문 및 법령용어의 불명확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해석의 혼란에 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고, 이 문제는 또한 법령용어의 모호함 또는 비통일적 사용과도 연관이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을 지칭하는 명칭만으로도 회계법 상에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회계법 제23조제1호), ‘해당 상급기관’(회계법 제24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회계법 제31조 및 제40조), ‘회계검증기관’(회계법 제33조 내지 제36조), ‘해당 감독통제기관’(회계법 제45조) 등이 있고, 재정법 상에는 ‘해당 기관’(제26조 및 제28조), ‘해당 상급기관’(재정법 제47조), ‘해당 재정기관’(재정법 제50조),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재정법 제52조) 등으로 제각각 표현하고 있다. 물론 전후 조문과의 문맥상 파악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법령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선과 법령용어의 명확하고 통일적인 사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재정법과 회계법 상의 일부 조문상의 중복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법과 회계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상위법과 시행규정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몇 개 조문에서 불필요한 중복이 있는 것은 입법기술상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객관적인 회계검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법 제4장에서 회계검증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내용상 회계검증기관으로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을 도입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외국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독립된 ‘부기검증사무소’에 의하여 부기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¹¹³⁾ 현재로는 법 규범상 이 두 개의 회계검증제도가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존재함이 분명하다. 결국 공공부문, 특히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우에는 회계검증제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회계검증기관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장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제도와 통합하여 자본주의사회와 같이 공인회계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시장경제에 적합한 회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회계처리방식과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야말로 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회계법 제7조와 제42조 및 제43조에서 회계일군에 대한 양성과 재교육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 회계관련 교육기관의 증설, 외국의 회계제도 및 회계기법에 관한 교육연수 등을 통해 회계전문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어야 회계법 제정의 의의가 더욱 살아날 것이다.

113) 『외국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7조 내지 제13조 참조.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제 1 절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1.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구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외국인투자¹¹⁴⁾ 및 경제특구와 관련한 회계법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¹¹⁵⁾와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회계법제와 법제적으로 가장 정비되어 있고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관련 회계법제로 나누어 분석·검토해 보기로 한다.

북한의 경우 외국투자가는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지역 어디에나 창설·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 단독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정해진 지역에만 창설·운영할 수 있다.¹¹⁶⁾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회계법제는 바로 이

114) 북한은 『외국인투자법』(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로 채택, 2004. 11. 3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제2조에서 외국인투자의 종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해 두고 있다.

- 외국인투자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 외국인투자기업: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 합작기업: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운을 분배하는 기업
- 합영기업: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운을 분배하는 기업
- 외국인기업: 외국인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
- 외국기업: 공화국령역 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

11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법』(2004년 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회계법제는 북한 전 지역에 창설·운영할 수 있는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그리고 정해진 지역(개정 전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로 되어 있었다)에만 창설·운영할 수 있는 외국인기업들에 적용된다.

116) 『외국인투자법』 제3조 참조.

들 합작기업과 합영기업, 그리고 자체 내에 회계제도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경제특구에 설립된 외국인기업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법제상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외국인투자법(1992년 제정)이다. 외국인투자법에는 경제특구를 포함하여 북한 영역 안에 투자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그리고 외국인기업 등 여러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회계관련 법제의 근거법으로는 합영법(1984년 제정), 합작법(1992년 제정), 외국인기업법(1992년 제정) 및 외국투자은행법(1993년 제정) 등이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관련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이 존재하며, 부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그리고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과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등을 두고 있다.¹¹⁷⁾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회계관련 법제의 근거법들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 <표5>와 같다.

북한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그 종류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의 고려에 따라 각기 다른 회계관련 법제를 두고 있다.¹¹⁸⁾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관련 법제이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한다.

117) 합영법 제정 당시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이 합영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세칙』의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4, 280~306면 참조.

118) 북한의 경제개방 초기에는 경제특구, 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특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을 제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포기하고 현재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등 일부 기본적인 법규를 제외하고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의 성격에 따라 각각 관련법과 시행규정을 정비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표 5 >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회계관련 규정 비교

항 목	합 영 법	합 작 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제 정	- 1984. 9. 8	- 1992. 10. 5	- 1992. 10. 5	- 1993. 11. 24
최종 개정*	- 2004. 11. 30	- 2004. 11. 30	- 2004. 11. 30	- 2002. 11. 7
적용대상	- 합영기업	- 합작기업	- 외국인기업	- 외국투자은행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
적용범위	- 라선경제무역지대 -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도 가능	- 라선경제무역지대 -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도 가능	- 라선경제무역지대	- 외국투자은행 중 합영은행은 북한 전 영역 - 외국인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
재정검열	- 재정검열원을 둠 (이사회에서 임명)	-	-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을 검열할 수 있음	-
회계계산	-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규범에 따름	-	- 기업소재지 안에 재정회계문건을 둠 - 재정관리와 회계를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규범에 따름	-
회계결산	- 분기 및 연간 재정회계결산서류를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 재정기관 등 해당 기관에 제출	- 월별, 분기별, 연간으로 회계결산서류를 기업창설 승인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출	-	- 회계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합 영 법	합 작 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기타 감독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활동은 이 법에 따르며,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북한의 다른 법과 규정에 따름 -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은 북한의 해당법규에 따름 -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함

*필자에게 확인된 사항에 한함

2.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내용 및 분석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기계산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이 존재하며, 부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북한의 회계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 규정들 사이의 차이를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6>과 같다.

< 표 6 > 북한 회계법제간의 주요 항목 비교

항 목	회 계 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 외국인투자기업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의 외국인투자기업(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외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
회계년도	- 1월1일~12월31일	- 1월1일~12월31일	- 1월1일~12월31일

제 1 절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항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화폐 및 단위	- 조선원	- 조선원 - 외화로 할 경우 거래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환 및 결제시세에 따라 계산된 조선원을 곱쓰기	- US\$ - 기업의 경제거래규모에 따라 화폐단위를 천, 만, 백만으로 할 수 있음
문건작성언어	-	- 조선어 - 외국어인 경우 조선어로 된 번역문 첨부	- 조선말 -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 첨부
회계담당자	-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	- 기업의 재정부기부서	- 회계원, 계산원, 출납원 같은 회계일군 -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업무 위탁 가능
회계준거규정 및 기업회계기준	- 별도의 언급 없음	- 별도의 언급 없음	-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같은 관련규정에 준함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름 -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이 규정에 준하여 기업회계기준 작성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	-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산단계에 따르는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계산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부기계산자리를 옳게 정하며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야 함	-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책임자가 짐. 기업책임자는 위법적인 회계업무를 지시할수 없음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채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문건	- 회계서류, 회계장부, 회계결산서	- 부기계산장부, 부기결산서, 전표	- 회계서류, 회계장부, 회계결산서 - 제35조~제39조에서 상세하게 규정
장부와 전표의 양식	-	- 중앙채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정함	- 표준양식 - 양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회계계산시점	- 경제거래가 생길 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폐자금을 입금하였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2.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인수하였을 경우 3. 재산을 인수 또는 발송하였을 경우 4.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거나 그것을 청산하였을 경우 5. 자본금, 기금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6. 수입 또는 비용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손익을 확정하거나 분배할 경우 8. 기타 회계계산이 필요한 경우
장부기입방법	- 종합계산과 세분계산, 시순식계산, 체계식계산, 현물계산과 금액계산을 결합 - 복식부기	- 복식기입	- 복식기입방법

항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계산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재정상태와 경영결과를 사실대로 계산 -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 -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별하고 정확히 계산 - 부기계산년도 안에서 부기계산방법 변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함 -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 -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 불가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 -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
회계계산방법	- 상세규정 없음	- 제 14조 ~ 제 28조에서 상세히 규정	- 제 13조 ~ 제 28조 및 『기업재정규정』에서 상세히 규정
회계결산주기	- 분기, 반년, 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분기, 연도별 - 월부기결산: 종합계산자리유동고일람표 작성 - 분기 및 연도 부기결산: 부기결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분기, 반년, 연간 - 연간회계결산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월, 분기, 반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라 작성
회계결산문건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계산자료에 기초하여 함 - 회계결산 전에 빠진 거래 등록, 미결제 거래 청산, 재산실사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를 기본표로 하고, 그를 분석하는 부표를 작성 -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는 종합계산자리원장의 부기계산자리잔고를 그대로 올리는 방법과 가감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연관시켜 검토 확인하고 종합편찬 2. 업종에 따르는 원가명세서를 첨부 3. 당해년도와 지난년도의 회계자료들을 비교하여 표시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를 분석하는 부표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만들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손익계산서를 보고 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게시식으로 함 5. 잘못 이해할수 있는 회계내용에 대하여서는 해석을 첨부
회계결산서의 정의와 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재산면과 채무 및 자본면으로 갈라 종합하고 대조하는 균형표 - 손익계산표는 기업의 일정한 기간 경영활동결과를 수입과 지출 항목별로 갈라 종합하고 대조하여 손익을 확정하는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결산서는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주기별로 기업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손익처분, 현금유동의 결과와 원인을 반영하는 회계문건 - 회계결산서에는 결산서, 결산서주해, 재정상태 설명서가 속함
회계결산서의 반영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자료를, 재정상태 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이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
결산이윤 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에 각각 계산하며, 그 이윤은 서로 일치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처분계산서 작성 1. 이익처분정형을 미처분이익액, 자체기금인입액, 이익처분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이윤은 유동고일람표의 재산총액에서 채무 및 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 - 처리하지 못한 이윤은 당해년도 이윤에서 분배처분된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이윤으로 계산 	<p>액, 다음년도 조월 이익액으로, 손실처리정형을 미처리손실액, 손실처리액,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p> <p>2. 미처분이익액과 자체기금인입액의 합계를 이익처분액과 다음연도 조월이익액의 합계와 대비하고 미처리손실액을 손실처리액과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p> <p>3. 이익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p>
회계결산서 내부절차	- 회계분석 절차를 별도로 둠	- 부기결산서는 기업책임자와 재정부기책임자가 연명수표하여 부기검증사무소의 부기검증을 받은 다음 이사회 또는 공동협의 회 비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결산서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함 -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짐
회계결산서 외부절차	-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	-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세무기관에 제출	- 기업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60일안으로 연간 회계결산서를 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연간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짐. 월, 분기, 반년 회계결산서의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름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결산서에 기초하여 실시 -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실시 - 제3장(제25조~제30조) 	-	-
회계검증의 준거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기검증규정」에 의하나 준거규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검증은 회계검정규정과 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금규정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함
회계검증의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기검증은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적법성, 비밀담보의 원칙에서 함 	-
회계검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 - 기타 자세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기검증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검증을 하는 조직 -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 시, 군 또는 지구별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 - 회계검증사무소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함
회계검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회계결산서만 회계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무역회사의 지사, 대리인은 부기계산과 결산문건의 부기검증 요구 가능 -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이 의뢰하는 대상에 대하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짐.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의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름 -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됨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검증에 대한 간섭금지	-	-부기검증과 관련한 합법적인 활동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음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당한 독자적인 법인임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수 없음
회계검증준칙 작성	-	-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함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회계검증 사무소의 설립	-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 시, 군에 조직하거나 지구별로 조직할 수 있음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함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설립신청서의 심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
회계검증 사무소의 등록	-	-부기검증사무소창설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된 부기검증사무소의 명칭, 장소, 성원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날을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일로 함
회계검증사무소 의 설립가능수	-	-	-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둠 -2개이상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음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검증 사무소의 설립신청	-	-	-공업지구에 회계검증사 무소를 내오려는 회계 검증조직은 공업지구관 리기관에 설립신청서를 내야함 -이 경우 기본규약, 사 무소성원의 자격, 경 력증명문건을 첨부하 여야 함 -설립신청서에는 사무소 의 명칭, 소재지, 기본 업무, 기구와 정원수, 책임자와 성원의 이름, 자격, 자본금총액, 존 속기간, 해산사유같은 것을 밝혀야 함
회계검증 사무소의 업무	-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 산의 정확성을 객관적 으로 증명하고 확정하 는 사업 -부기 계산, 결산과 관 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를 의논하는 상담봉사 와 그것을 살피고 의 견을 주는 검사도 부 기검증에 포함	1.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2.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 계검증 3. 유형재산에 대한 감 정평가 4.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5.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6. 이밖에 회계관련법규 에 지적된 업무
회계검증 사무소의 정원수	-	-부기검증사무소는 부 기검증원자격을 가진 부기검증원들로 구성 -부기검증사무소에는 3~10명의 부기검증원 을 둠	-회계검증사무소에는 3 명 이상의 회계검증원 과 1명 이상의 감정평 가원을 둠

제 1 절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검증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기검증원자격을 받은 북한 국민 -부기검증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부기검증원자격시험위원회가 부여 -부기부문의 학위, 학직 소유자와 명예칭호를 받은 일군, 3급 이상의 급수를 가진 부기부문의 교원, 연구사, 경제사는 자격시험 없이도 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문에서 3년 이상 일한 자가 될 수 있음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는 회계검증원으로 사업할수 없음
회계검증원의 권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과 관련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부기계산문건을 열람요해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검증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검증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같은 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으며 장부와 현물을 대조확인할 수 있음 -기업과 개인은 회계검증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함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기검증원은 자기가 한 부기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 -부기검증원은 투자액, 재산가격, 재산평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함.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 수 없음
회계검증업무의 제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검증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을 하지 말아야 함.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회계검증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검증원에게 넘겨주어야 함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검증상 위법행위 처리	-	-부기검증보고서에는 부기 계산과 결산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당하면 의견상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함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 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함. 수정할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
회계검증상 손해보상준비금	-	-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당기순이익의 10%를 직전 회계연도 총수입액의 10%가 될 때까지 손해보상준비금으로 적립. -업무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때에 보상 -회계검증사무소는 손해보상준비금을 손해보상에만 써야 함. 손해보상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쓰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계검증내용	-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계산서, 이윤 및 분배 계산서,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서, 관리비계산서, 송금환자계산서와 같은 계산문건), 투자 몫 및 투자실적과 관련한 문건, 노임계산문건,	-기업은 회계검증을 제때에 정확히 받아야 함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이 속함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세금계산문건, 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지불 문건, 이밖의 부기계 산문건 -기업의 해산과 파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 련하여 제기되는 문건 의 정확성을 확정하는 사업도 부기검증대상 에 포함	
회계검증 세부 절차와 방법	-규정하지 않음	-『부기검증규정』 제15 조~제24조에서 상세 히 규정	-『회계검증규정』 제24 조~제36조에서 상세 히 규정
회계검증 사무소의 운영	-	-부기검증사무소는 부 기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요금을 운영경 비로 지출 -부기검증사무소는 분 기 및 연간 재정부기 결산서를 중앙재정기 관에 제출	-
회계검증주기	-분기, 반년, 연간 -필요한 경우 주기 외 에도 가능	-부기결산시(즉, 월, 분 기, 연도별)* -기타 비정기적인 검증 은 의뢰가 있는 경우	-연간 회계결산서는 회 계검증을 받아야 효력 을 가짐 -월, 분기, 반년회계결 산서의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름
회계검증요금	-회계검증을 받은 기 관, 기업소, 단체가 지불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불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 검증, 상담과 관련한 검 증료 또는 봉사료를 받 을 수 있음. 검증료와 봉사료의 기준을 정하 는 사업은 공업지구관 리기관이 함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검증의 감독통제기관	-	-부기검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 는 중앙재정기관이 함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 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 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함. 중앙공업지구지도기 관은 회계검증정형을 정 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 야 함
회계검증의 감독통제방법	-	-	-회계검증에 대한 감 독통제는 회계검증사 무소가 작성한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는 방 법으로 함 -회계검증에서 엄중한 위 법행위가 나타났을 경 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 관에 알리고 현지 조사 를 할 수 있음
회계검증상 업무중지처벌	-	-이 규정을 어겼을 경 우에는 정도에 따라 부기검증원자격을 박 탈하거나 500~2,000 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 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짐	-회계검증에서 중요한 자 료를 누락시켰거나 엄 중한 착오를 일으킨 회 계검증원의 업무는 6개 월이상 1년까지 중지 -돈이나 물품을 받고 사 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 증을 한 회계검증원의 업무는 1년이상 중지 -회계검증원이 3회 이 상 업무중지처벌을 받 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 계검증사무소의 운영을 중지
회계검증상 벌금 및 연체료	-	-이 규정을 어겼을 경 우에는 정도에 따라 부기검증원자격을 박 탈하거나 500~2,000 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 긴 행위가 엄중할 경 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짐	1. 업무기록장부를 작성 하지 않았거나 정확하 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US \$까지의 벌금 2. 손해보상준비금을 적 립하지 않았거나 다 른 용도에 썼을 경우 에는 5,000 US\$까 지의 벌금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p>3.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p> <p>4. 회계검증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p> <p>5.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p> <p>-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림.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 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7일이 지난 날부터 함</p>
회계검증상 의견과 분쟁	-	<p>-부기검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음.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함</p> <p>-부기검증과 관련한 의견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p>	-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문건보존	-정해진 기간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 구 보존	1. 회계서류 5년 2. 회계장부 10년 3. 연간회계결산서 10년 4. 월, 분기, 반년회계 결산서는 기업의 규약 에 따름
회계사업지도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재정기관	-
회계 감독통제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	- 공업지구에서 회계사 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이 함. 중앙공업지구지 도기관에는 기업의 회 계감독사업을 담당한 감독부서를 둘 수 있음 - 회계감독은 회계결산 서와 회계검증보고서 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함. 이 경우 위법행위 가 발견되면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알리고 기 업의 회계사업정형을 직접 조사할수 있음
기업내부의 회계검증제도	-「회계분석」제도를 둠 (회계법 제3장)	-	-기업은 종합계산장부작성 업무와 재산보관업무, 내부회계검증업무를 분 리시키며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 을 정하여야 함. 투자, 재산처분, 자금공급 같 은 중요경제업무의 책 임한계를 명백히 하여 야 함

제 1 절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회계업무의 겸임 및 인계인수	-회계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는 회계일군이 임명, 해임, 동원, 병치료 같은 원인으로 회계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함. 인계인수는 제3자의 입회 밑에 서면으로 함	-	-기업은 출납업무와 회계장부기록계산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를 겸임시키지 말아야 함 -조동, 동원, 병치료, 해임 같은 사유가 있는 회계원은 제3자의 입회 밑에 회계사업을 인계하여야 함.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입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입회는 기업의 책임자가 함
회계 오류	-경제적 손실 발생시 사업 정지, 벌금 또는 손해 보상	-	-
회계 차질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회계검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경제관리에 지장을 줄 시 회계일군의 자격급수 강등 또는 박탈	-	-
회계 책임	-회계사업 간섭, 회계문건 위조 또는 훼손 시 책임있는 일군 또는 국민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규정 위반시 5,000원 ~1만원까지의 벌금 -위반행위가 엄중할 경우 형사적 책임	-손실보상: 회계업무집행 과정에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킴 -업무중지: 회계결산서 작성에서 중요자료를 누락시켰거나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6개월 부터 1년까지 업무를 중지시킴. 돈, 물품을 받고 사실과 어긋나게 회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상 업무를 중지시킴 -벌금적용

제 4 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항 목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결산서를 사실과 어긋나게 작성하였거나 의무적인 회계검증을 거절,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 2.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였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 3. 기업이 연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US\$까지의 벌금 4.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 계산,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 5. 위법적인 회계계산을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

* 『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제67조 제2문에 의하면 연간부기결산서만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¹¹⁹⁾

119) 즉, 이에 따르면 월, 분기, 연도별로 결산을 하더라도 연간부기결산서만 부기검증사무소의 회계검증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회계검증을 더욱 강화하여 분기부기결산서에도 회계검증을 요구하는지가 의문이나, 그 취지로 볼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연간부기결산서만 회계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총 4장 38조)은 1995년 12월 4일 정부원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규정

이 규정 제1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화폐자금 조성, 분배, 이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회계법』에서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천명한 것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부기계산은 경영활동과정에 재정상태의 변동과 경영활동의 결과를 화폐적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경영계산”이라고 ‘부기계산’을 정의내리고 있다.

부기계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데(제3조), 이는 회계법이나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과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회계결산기를 기업들이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자유로이 정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하도록 하고, 외국어로 표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이 있어야 한다.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와 부기결산서, 전표가 포함된다. 부기계산은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에 하여야 하는데,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의 양식은 중앙재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¹²⁰⁾

부기계산은 복식기입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복식기입은 경영거래를 부기계산자리에 올릴 때 두개의 계산자리에 서로 맞세워 다같이 올리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6조).

120)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35조 참조.

부기계산의 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다만, 외화로 경영계산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환 및 결제 시세에 따라 계산된 조선원을 곱쓰기하도록 하고 있다.¹²¹⁾

제8조에서는 “부기문건은 부기계산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게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기계산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또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42조에서 회계문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회계서류 5년, 회계장부 10년, 연간회계결산서 10년, 그리고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르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제10조에서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과 『개성공업지구 기업제정규정』이 따로 제정되어, 이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제11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기업의 재정부기부서가 맡아하며 그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3조에서는 기업의 회계담당자에 관하여 “기업의 회계업무는 회계원, 계산원, 출납원 같은 회계일군이 한다.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회계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1장의 일반규정에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과 가장 큰 차이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회계준거규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의 적용,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의 작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부

121)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US\$로 하도록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4조 참조.

기계산규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¹²²⁾

2)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

부기계산규정 제12조에서는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는 것은 경영계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계산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부기계산자리를 옳게 정하며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통일적으로 정해진 대로 부기계산을 하도록 촉구하는 훈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제9조에서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면서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 책임자가 진다. 기업책임자는 위법적인 회계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훈시규정이라도 보다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결과를 사실대로 진실하게 계산하여야 하며,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별하고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며, 부기계산년도 안에서 부기계산방법을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보다는 다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¹²³⁾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기본 원칙들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

122)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7조(회계준거규정, 회계관습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회계는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 규정에 준하여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8조(기업회계기준의 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3)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12조(회계계산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계시의 실적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에서의 회계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는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재정상태와 관련된 거래와 손익거래는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항목 거래와 손익계산서 항목 거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 손익거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¹²⁴⁾

부기계산규정 제14조~제28조까지는 회계계산의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기계산자리¹²⁵⁾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수입, 지출을 계산하는 수단이다. 부기계산자리의 순위설정과 계산자리번호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¹²⁶⁾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재산계산자리, 채무계산자리, 자본계산자리)와 손익계산표계산자리(수입계산자리, 지출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재산, 채무, 자본 계산자리는 재정상태표¹²⁷⁾에 반영하며 수입, 지출 계산자리는 손익계산표에 반영한다.

그리고 부기계산자리의 기입은 계산자리의 항목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계산자리의 기입은 재산의 증가와 잔고를 차방에, 재산의 감소를 대방에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리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124) 김병호, 앞의 논문, 54면.

125) '부기계산자리'는 우리나라의 '계정과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회계계시'라고 표현하고 있다.

126) '부기계산자리' 즉, 계정과목을 중앙재정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통일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회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제개방과정의 회계제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127) 북한의 회계결산서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는 재정상태표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형태이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소의 재정상태를 경영자금의 두 측면인 경영재산과 자금원천을 상호 관련시켜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문건으로서 과거에는 정부대조표라고 하였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소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상문, "북한의 회계제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제논총』 4호, 1995. 5, 41면 참조.

2. 채무 및 자본 계산자리의 기입은 채무 및 자본의 증가와 잔고를 대방에, 채무 및 자본의 감소를 차방에 한다.
3. 수입계산자리의 기입은 수입의 증가와 잔고를 연도초로부터 결산기 말까지 누계액으로 대방에 한다.
4. 지출계산자리의 기입은 지출의 증가와 잔고를 연도초로부터 결산기 말까지의 누계액으로 차방에 한다.

또한 재산의 계산은 유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상재산으로 갈라한다. 유동재산에는 구입 및 저장, 생산 및 판매, 결제 단계에 있는 재산이 포함되며 고정재산에는 유형의 고정재산과 무형의 고정재산이 포함된다. 투자재산에는 1년 안에 회수할 수 없는 유가증권, 채권, 전불비용 같은 것이 포함되며 연상재산에는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 같은 것이 포함된다.¹²⁸⁾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며 감가상각금은 달마다 계산하여 원가 또는 유통비에 넣는다. 그런데 감가상각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고 한 이외에 별도의 상세한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¹²⁹⁾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는 달리 개성공업지구의 경

128) 연상재산은 무형자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의 무형자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설비와 조업비는 창업비와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더 이상 무형자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채발행비도 무형자산이 아니라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구비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김병호, 앞의 논문. 55면.

129)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서는 감가상각금에 대하여 “감가상각금을 조성적립하는 방법에는 정액상각법과 비례상각법이 있다. 정액상각법은 감가상각금총액을 고정재산의 내용년한으로 나누어 매해 평균적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정액상각법은 건물, 구축물, 전도장치들과 내용년한이 상대적으로 길며 그 생산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설비들에 적용할 수 있다. 비례상각법은 감가상각금총액을 고정재산내용년한기간의 예상 생산량이나 작업량 또는 작업시간수로 나누어 그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비례상각법은 과일나무와 같이 그 생산성이 내용년한기간에 일정한 합법칙성을 가지고 변화되거나 여러 가지 운수수단과 같이 그 수명이 작업량이나 작업시간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잇재산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감가상각률은 국가가 고정재산의 마멸속도,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속도 등을 타산하여 고정재산의 내용년한을 바로 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정재산의 형태, 종류, 용도별로 유일적으로 제정한다”고 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29~31면, ‘감가상각금’ 및

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정책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 중 기업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해두고 있다.¹³⁰⁾

부기계산규정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재산의 구입가격은 취득가격 또는 취득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유동재산 가운데서 물자재산가격은 취득가격으로만 계산하며 물자구입경비는 따로 계산한다. 고정재산가격은 취득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유동재산 가운데서 물자재산의 소비가격은 취득가격 또는 평균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¹⁾ 이 규정은 모든 자산의 구입원가에 취득원가를 포함시키는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자재산에 대하여서만 부대 경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¹³²⁾

채무의 계산은 1년까지의 단기채무와 1년이 넘는 장기채무로 갈라한다. 단기채무에는 단기대부금, 단기수형채무, 구입채무, 내줄 노임, 납부할 세금, 납부할 사회보험료, 전수금, 재산보험보상금, 기타 채무 같은 것이 포함되며 장기채무에는 장기대부금, 사채, 장기수형채무 같은 것이 포함된다.

‘감가상각률’ 항목 참조.

130) 『개성공업지구 기업제정규정』 제10조~제14조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유형 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형태와 리용방식, 과학기술발전영향 같은 것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이 끝날때까지 변경할수 없다. 그리고 무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무형재산의 잔존가치는 영으로 한다. 또한 기업은 경영활동에 리용하지 않는 고정재산과 건설중에 있거나 완성하지 못한 고정재산, 시일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131) 북한에서 ‘물자재산’은 고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물자재산들, 즉, 원료, 자재를 비롯한 생산 및 경영용 저장품, 생산과정에 놓여있는 미성품, 자체생산반제품, 생산한 완제품, 구입상품 등이 속한다. 물자재산평가방법은 생산적 및 비생산적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자재, 반제품 등 구입물자재산, 생산과정에 놓여있는 미성품과 앞으로 생산에 쓸 자체생산반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완제품과 구입상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각각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510면, ‘물자재산평가’ 항목 참조.

132) 김병호, 앞의 논문, 56면.

자본의 계산은 자본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³⁾

1. 등록자본금은 현물재산, 화폐재산을 투자할 때마다 계산한다.
2. 현물재산의 투자가치는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합병기업의 예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일정한 몫이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일정한 비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4. 기업의 기금은 합병기업인 경우 이사회가 결정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합작기업인 경우 공동협의회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다.
5. 당해년도 이윤은 유동고일람표의 재산총액에서 채무 및 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6. 처리하지 못한 이윤은 당해년도 이윤에서 분배처분된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이윤으로 계산한다.

북한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주식회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자본금이라는 계정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¹³⁴⁾ 부기계산규정에서는 합병기업의 예비기금을 일정한 몫이 될 때까지 결산이윤의 일정한 비율로 적립하도록 하고, 일정한 몫이나 비율에 관하여 확정해 두지 않고 있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기업은 예비기금을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당기순이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본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 수 있다고 그 용도까지 언급하고 있다.¹³⁵⁾ 또한 자체기금에 대하여도 “기업은 당기순이윤에서 예비기금과 이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원천이 있을 경우 자체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체기금은 확대재생산, 기술발전 같은 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⁶⁾

133)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에서 자본의 조성방식, 등록자본, 투자의 형태와 인정시점, 투자재산의 가격, 기금의 조성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익의 표시에 관하여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34) 김병호, 앞의 논문, 56면.

135)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제26조 참조.

136)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제27조.

부기계산규정에서 수입의 계산은 제품판매수입과 건설물 인도수입, 기타 수입으로 갈라 한다. 수입은 제품판매금액이 입금되었거나 받아야 할 금액이 포함된다.¹³⁷⁾

제품판매수입은 판매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¹³⁸⁾

1. 주문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출하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2. 위탁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받은 자가 판매실현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3. 견본판매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출하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4. 예약판매인 경우에는 받은 예약금가운데서 예약상품을 인도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5. 할부판매인 경우에는 자금회수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이 되었을 때에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제품판매수입은 제품별 판매량에 제품별 실지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할부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건설물인도수입은 공사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건설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완공된 건설물을 당사자에게 인도한 것만 건설수입으로 한다.
2.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건설수입으로 한다.

기타 수입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수입으로 계산한다.

137) 『개정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수입의 계산에 관하여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부기계산규정보다는 간략하게 되어 있다.

138) 수익의 인식시점에 관한 내용은 자본주의에서의 수익인식시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문판매의 경우에는 출하시점,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판매가 실현된 시점, 견본판매(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용판매라고 칭함)의 경우에는 매입 의사표시 시점, 예약판매의 경우에는 제품의 인도시점, 그리고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회수기일도래시점으로 하고 있다. 할부판매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회수기일도래 시점의 수익 인식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호, 앞의 논문, 56면 참조.

지출의 계산은 판매원가, 건설원가, 기타 지출로 갈라 한다.¹³⁹⁾ 판매원가는 기초원가와 생산원가(실적원가)를 합하고 기말원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건설원가는 건설공사완공원가 또는 건설공사진행원가로 계산한다. 원가항목과 항목별 비용지출계산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¹⁴⁰⁾ 기타 지출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지출을 계산한다.¹⁴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본주의적 회계의 원칙들이나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한 내용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몇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규정하거나 따로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소 불안한 지위에 놓이도록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규정들과 비교할 때 회계계산의 원칙, 원가의 계산, 감가상각, 그리고 예비기금 및 자체기금의 적립과 사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회계계산의 시점에 관하여 회계법에서는 “경제거래가 생길 때”라고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제11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계산규정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¹⁴²⁾

139)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비용(지출)의 계산에 관하여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40) 부기계산규정에서 원가항목과 항목별 비용지출계산방법을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원가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제16조에서는 원가, 비용계산의 금지대상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즉, 재산의 구입을 위한 자본지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일반이자보다 높은 이자,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사용료, 대외투자 및 관련기업을 대신하여 지출된 관리비, 기준을 초과한 회수 불가능채권 및 대외사업비, 몰수당한 재산손실액, 위약금, 연체료, 벌금, 보상금, 당기순이익으로 적립한 예비기금,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을 원가, 비용계산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141) 따라서 기타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김병호, 앞의 논문, 57면.

142)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11조(회계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이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화폐자금을 입금하였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2.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인수하였을 경우

3) 부기결산

부기계산규정 제3장에서는 부기결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에서 부기결산은 “결산기간의 재정상태와 경영활동의 재정적 결과를 확정하는 종합적인 재정총화”라고 정의하고, 제30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기간의 경영활동과 재정상태를 분석총화하고 기업의 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기결산주기에 관하여는 제30조에서 부기결산은 월, 분기, 연도별로 하도록 하고, 월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종합계산자리유동고일람표¹⁴³⁾를, 분기 및 연도 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부기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월, 분기, 반년, 연간으로 하도록 하고, 연간회계결산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월, 분기, 반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¹⁴⁴⁾하고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부기계산규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연간 결산서뿐만 아니라 월, 분기별 결산서의 작성도 의무사항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기계산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부기결산서는 재정상태표¹⁴⁵⁾와 손익계산표를 기본표로 만들며 그를 분석하는 부표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재산면과 채무 및 자본면으로 갈라 중

3. 재산을 인수 또는 발송하였을 경우
4.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거나 그것을 청산하였을 경우
5. 자본금, 기금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6. 수입 또는 비용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손익을 확정하거나 분배할 경우
8. 기타 회계계산이 필요한 경우

143) 우리나라의 회계개념으로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열거한 표를 의미한다. 김병호, 앞의 논문, 57면 참조.

144)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30조.

145) 우리나라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이를 부기균형표라고도 한다. 재정상태표는 결산기간의 기업소의 재산 및 자금원천의 구성과 구조·경영활동에 대한 자금보장과 그 재정적 결과·채권채무관계·지불능력 등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고 한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88면 참조.

합하고 대조하는 균형표이다. 손익계산표는 기업의 일정한 기간 경영활동결과를 수입과 지출 항목별로 갈라 종합하고 대조하여 손익을 확정하는 표이다.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를 분석하는 부표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는 종합계산자리원장의 부기계산자리잔고를 그대로 올리는 방법과 가감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작성한다. 이에 따르면 결산시 필요한 재무제표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현금흐름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⁴⁶⁾ 그러나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회계결산서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¹⁴⁷⁾

부기계산규정 제33조에서는 결산이윤은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에 각각 계산하며 그 이윤은 서로 일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기업 이익을 계산하고, 이익을 처분한 이후에 나머지가 자본에 산입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남한의 회계개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¹⁴⁸⁾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처리방식과 같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서로 연관시켜 작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⁴⁹⁾

부기결산서는 기업책임자와 재정부기책임자가 연명수표(서명날인)하여 부기검증사무소의 부기검증을 받은 다음¹⁵⁰⁾ 이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의

146) 김병호, 앞의 논문, 57면 참조.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14조에서 부기검증을 받는 부기계산문건 중 하나로 '이윤 및 분배 계산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유사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47)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의 회계결산서 문건 작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9조(회계결산서의 작성)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연관시켜 검토 확인하고 종합편찬한다.
제41조(회계결산서의 반영내용)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자료를, 재정상태 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리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

148) 김병호, 앞의 논문, 58면.

149)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25조~제29조 참조.

150) 이 또한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연간부기결산서만 의무적으로 회계검증을 받도록

비준을 받아야 한다.¹⁵¹⁾ 부기검증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 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기결산서는 정한 기간(분기부기결산서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연간부기결산서는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 안에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는 회계결산서의 세무기관 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제27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¹⁵²⁾

4)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제4장은 부기계산에 관한 감독통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기계산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는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5,000원~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감독통제규정은 북한의 회계법에서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제46조),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하고(제47조), 회계

되어 있고,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33조 참조.

151) 『합작법』 제16조, 『합영법』 제16조~제17조 및 부기계산규정 제22조제4호의 취지에 따르면 합영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합작기업의 경우 공동협의회가 각각 비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의 경우에는 회계결산의 내부절차 즉, 이사회 등의 비준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사의 설립형태에 각각 그 절차가 다르고, 다른 법령과 정관에 의해 규제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52)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제27조(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와 년간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 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48조)고 규정한 것에 비해서는 대체로 간략하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공업지구에서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는 기업의 회계감독사업을 담당한 감독부서를 둘 수 있다”(제45조), “회계감독은 회계결산서와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기업의 회계사업정형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제46조)고 규정하고, 제50조 내지 제53조에서 손해보상, 업무중지, 벌금 적용, 연체료 적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회계법이나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과 달리 회계업무의 책임이나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2)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제1장은 일반규정, 제2장은 부기문건 작성 및 부기계산원칙, 제3장은 부기계산자리와 그 계산방법, 제4장은 부기결산, 그리고 제5장은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반규정

제1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부기계산은 중앙재정기관의 통제를 받는데 반하여 외국투자은행은 북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다.

2) 부기문건작성 및 부기계산원칙

제2장에서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의 작성원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유사하다.

3) 부기계산자리와 그 계산방법

제3장에서는 재산, 부채, 그리고 자본 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재산과 부채의 경우는 계정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동일하다. 자본의 경우 자본금은 불입자본금, 예비기금, 그리고 임의의 적립금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은 자금운용수입, 봉사거래수입, 기타업무수입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자금조성비용, 봉사거래비용, 영업비용, 그리고 기타업무비용으로 구분한다.

4) 부기결산

제4장에서는 부기결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고정재산은 실재가격으로 평가하여 남한에서 고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남한의 원칙과 동일하다. 부기결산에서 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준비금에는 손실준비금과 퇴직보수준비금이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손실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익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보수준비금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장기부채로 기록하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이익의 처분항목으로서 처리된다. 앞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규정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북한에서는 재산의 경우 시가에 의한 재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현재는 자산의 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비교될 수 있다.

5)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제5장에서는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은행의 부기에 대한 감독통제권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 이

는 일반시중은행에 대한 회계 관련 감독권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갖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남한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부기검증사무소와 부기검증원, 제3장 부기검증대상, 절차와 방법, 그리고 제4장 제재 및 분쟁 해결로 나누어진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회계검증에 관하여 몇몇 조항을 두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서 회계검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부기검증규정과 비교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⁵³⁾

1) 일반규정

부기검증규정의 제정목적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정하는 사업이며, 부기 계산,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도 부기검증에 포함된다고 한다.¹⁵⁴⁾

부기검증의 대상은 북한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무역회사의 지사, 대리인이며, 이들은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의 부기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기검증의 기본원칙으로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적법성, 비밀담보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

153)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다음 절에서 주로 논의하기로 한다.

154)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제12조제5호에서도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을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는 비단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뿐만 아니라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등도 포괄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 상정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는 훨씬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

부기검증과 관련한 합법적인 활동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부기검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2) 부기검증사무소와 부기검증원

북한에서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조직이다.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원자격을 가진 부기검증원들로 구성되며, 부기검증사무소에는 3~10명의 부기검증원을 둔다.¹⁵⁵⁾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 시, 군에 조직하거나 지구별로 조직할 수 있다.¹⁵⁶⁾ 부기검증사무소창설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부기검증사무소의 명칭, 장소, 정원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을 받은 북한 국민이 될 수 있으며, 부기검증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부기검증원자격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위원회가 준다. 다만, 부기부문의 학위, 학직 소유자와 명예칭호를 받은 일군, 3급 이상의 급수를 가진 부기부문의 교원, 연구사, 경제사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부기검증원의 자격을 가진다.¹⁵⁷⁾ 이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제도를 통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사제도와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에게도 자격을 인정해주기도 하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¹⁵⁸⁾ 등과 유사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다.

155) 부기검증원은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부기검증사무소는 회계법인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56)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에서 회계검증을 담당한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33조 참조.

157) ‘경제사’는 경제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급수는 6급을 받게 된다. 급수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볼 수 있으며, 대부분 합격한다고 한다. 앞의 전 북한 재정 부기과 지도원의 증언 참조.

158) 법무사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분야 공무원 경력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99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법에서는 자격을 주지 않고 그 대신 제1차 시험만 면제하도록 하였다.

3) 부기검증 대상, 절차와 방법

부기검증은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계산서, 이윤 및 분배 계산서,¹⁵⁹⁾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서, 관리비계산서, 송금환자계산서와 같은 계산문건), 투자 몫 및 투자 실적과 관련한 문건, 노임계산문건, 세금계산문건, 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지불 문건, 이 밖의 부기계산문건에 대하여 한다.

또한 기업의 해산과 파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건의 정확성을 확정하는 사업도 부기검증대상에 포함된다. 상담봉사는 부기 계산, 결산 문건의 작성, 부기일군의 양성사업과 같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한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이 의뢰하는 대상에 대하여 하게 된다. 부기검증은 의뢰에 따라 정기적인 검증과 비정기적인 검증으로 나누어진다. 부기검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부기검증사무소에 부기검증의뢰서를 내야 한다. 부기검증의뢰서에는 기업명, 부기검증대상, 부기검증날자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부기검증은 부기검증원이 하는데, 부기검증원은 자기가 한 부기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부기검증원을 지적하여야 한다.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과 관련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부기계산문건을 열람요해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검증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부기검증원은 투자액, 재산가액, 재산평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이 끝났을 경우 부기검증보고서를 작성한다. 부기검증보고서에는 부기 계산과 결산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당하며 의견상이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부기검증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기계산과 결산, 부기문건의 작성과 같은 것을 방조할(도와줄) 수 있다.¹⁶⁰⁾

159) 이윤 및 분배계산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의 결산관련 규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회계문건인데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처분계산서와 유사한 성격의 문건으로 생각된다.

160)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3조 제2문에서는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은 회계검증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요금을 내야 한다.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요금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요금은 부기검증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부기검증사무소는 분기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분기 첫 달 20일까지, 연간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해 2월 15일까지 중앙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부기검증사무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기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영구 보존한다.

4) 제재 및 분쟁해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부기검증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500~2,000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부기검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¹⁶¹⁾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기검증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¹⁶²⁾

3.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회계규정, 특히 그 중에서도 세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

사무소에 회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기문건의 방조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

161) 이 규정에서는 신소와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6조에서 부기검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에서 부기검증사무소의 창설에 관해 해당 도 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그 등록기관인 해당 도 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가 신소 및 청원의 접수기관이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중앙재정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62)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서는 회계검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신소와 청원, 그리고 협의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정』, 그리고 부기검증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상당히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북한 법제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비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부기계산규정은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부기검증규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는 북한의 기준에 의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민으로 구성된 부기검증원이 부기 계산과 결산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성한 부기검증보고서에 의하여 검증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회계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서는 모두 국가 재정기관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은 북한 당국의 의지에 의하여 마음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회계규정들은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관련 규정들 즉,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등에 비해서는 자율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관련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관련 규정들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회계법제의 정비와 함께 법률 및 회계와 관련한 외국인투자회사도 유치하여 가시적인 경제개혁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³⁾ 이처럼 제도와 현실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면 북한에서도

163) 북한에서 2004년 8월경 외국계 법률자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회계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법제분야에서 합리적인 제도화 수준을 갖추어 가게 될 것이다.

제 2 절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개성공업지구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법제의 근거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2003년 제정)을 두고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개성공업지구 기업채정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2005. 9.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이 있다.¹⁶⁴⁾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남한측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창설형식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제4조)고 규정하여 그 기업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004년 9월 7일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에 북한 최초의 법률회사가 등장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가시적인 경제개혁조치의 하나라고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영국 변호사 겸 컨설턴트인 마이클 헤이는 외국 기자들에게 북한의 공식 법률기관에서 파생된 한 단체와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법률회사는 북한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들에게 법률 및 회계 서비스와 투자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합작회사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법률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항상 약 10명의 북한 변호사들이 대기중이며 아울러 북한 회계 관련 조직과 함께 일할 외국인 회계사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7일자 참조.

164)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규정의 경우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거나(헌법 제110조 제2호), 내각(1998년 헌법 이전에는 정무원)에서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9조 제2호). 일반적으로 ‘시행규정’ 또는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는데, 대부분의 규정들이 내각(또는 정무원)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다른 규정들과 달리 유독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채택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다른 경제특구들과 달리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가 남측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경제협력문제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에는 회계와 관련하여 회계결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기업은 반년, 연간을 주기로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제2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북한 『회계법』 제22조에서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분기별로도 회계결산서를 작성하고, 또한 회계검증도 연간경영회계결산서로 한정하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 “부기결산은 월, 분기, 년도별로 하여야 한다. 월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종합계산자리류동고일람표를, 분기 및 년도 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부기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제30조)고 규정하고, 부기결산서는 부기검증사무소의 부기검증을 받은 다음 이사회 또는 공동협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제34조), 분기부기결산서와 연간부기결산서를 해당 세무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제35조) 매월에도 부기결산을 하도록 하고, 분기부기결산서와 연간부기결산서에 대해 회계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어쨌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에 관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제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이하 이 항목에서 ‘회계규정’이라 한다)은 총 4장 5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규정

1) 회계규정의 사명

이 규정의 사명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회계계산과 회계문건작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기업관

리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제1조)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1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화폐자금 조성, 분배, 리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하여 통일성을 강조한 것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객관적으로 회계의 사명을 서술하고 있다.¹⁶⁵⁾

2) 회계대상

회계대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이며, 또한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 되는 지사, 영업소와 개인업자’도 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는 물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3) 회계업무의 담당

기업의 회계업무는 회계원, 계산원, 출납원 같은 회계일군이 하는데,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회계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 단순히 ‘기업의 재정부기부서’가 담당한다고 규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⁶⁶⁾

4) 회계기준 화폐와 언어

공업지구에서 회계화폐는 US\$로 한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7조에서 부기계산을 ‘조선원’으로 하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회계문건의 작성은 조선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회계문건을 다른 나라말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165) 이것은 북한 회계법에서 ‘재정적 실리’를 내세운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166)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11조 참조.

5) 회계연도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창설된 기업의 회계연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이다. 이것은 북한의 회계법제에서 통일적으로 규정된 사항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업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6) 회계의 준거규정

회계규정 제7조에서는 회계준거규정으로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채정 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하도록 하고,¹⁶⁷⁾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은 개성공업지구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업환경과 다름없이 만들겠다는 매우 상징적인 규정으로 보인다.¹⁶⁸⁾

제8조에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¹⁶⁹⁾과 같이 기업들의 회계 세부기준을 정하는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이 작성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회계법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는 회계의 준거규정이나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67) 다른 규정들은 회계규정보다 먼저 제정되어 있으나 회계검증규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 극히 최근인 2005년 9월 13일에야 제정되었다.

168)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제4조에서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있으나 그 내포는 같다고 할 것이다.

169)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1998년 4월 1일 제정되고, 2003년 11월 7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7)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

제9조에서는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책임자가 지도록 하고, 기업책임자는 위법적인 회계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탈법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 회계계산

1) 회계계산의 기본요구

제10조에서는 회계계산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회계서류를 만들고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장부에 기록계산하며 주기별로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산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회계계산의 기본요구를 정리하고 있다.

2)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

회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이 회계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¹⁷⁰⁾

1. 화폐자금을 입금하였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2.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인수하였을 경우
3. 재산을 인수 또는 발송하였을 경우
4.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거나 그것을 청산하였을 경우
5. 자본금, 기금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6. 수입 또는 비용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손익을 확정하거나 분배할 경우
8. 기타 회계계산이 필요한 경우

170)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북한의 회계법 제16조에서는 ‘경제거래가 생길 때’라고 단순히 언급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3) 회계계산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하고, 회계계시¹⁷¹⁾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하고,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원칙과도 매우 흡사한 내용이다. 이러한 회계계산의 원칙들은 자본주의사회의 기업회계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손익거래에 의한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¹⁷²⁾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⁷³⁾

4) 회계서류의 작성

회계서류의 작성은, 기록을 검은색으로 하고, 경제거래가 있는 즉시에 하며, 양식에 따르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금액을 조선말로 복기하며, 경제거래를 지시하거나 집행을 책임진 자의 도장을 찍거나 그가 수표(사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서류의 작성을 경제거래가 있는 즉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회계법과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¹⁷⁴⁾

171) '회계계시'는 '계정과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과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에서 「계시」는 “부기계산에서 경영재산의 운동과 그 원천의 변화를 일으키며 경영과정을 형성하는 거래들을 분류하여 그의 증가와 감소를 좌우의 두 면으로 구분계산하는 방식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곳”을 뜻한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486면 '계시' 항목 참조.

172)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금액, 회사합병시 감소액의 반환액 초과금액, 회사합병시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 재평가적립금,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보존을 위한 자산증여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포함되며,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잉여금과는 구별된다.

173)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등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174)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작성한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재무제표

5) 회계서류의 처리

기업은 경제거래를 시작하면 회계서류를 발행하거나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한 회계서류는 회계원이 보관한다. 그리고 회계서류를 접수한 기업은 양식, 기록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효력을 가지지 못한 불비한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돌려보낸다. 불비한 회계서류를 돌려 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금액을 틀리게 쓴 회계서류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정한 회계계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 경제거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회계계시로, 일반경제 거래는 유사한 회계계시에 합쳐 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회계계시에 해당하는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

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회계의 기본적 특징으로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정의 및 인식, 측정과 관련이 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논리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발생기준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거래 뿐 아니라, 신용거래,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상이전, 자산 및 부채의 가격변동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을 인식함으로써 기업실체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 항목이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기업실체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간과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여 수익으로 회수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설비투자에 현금이 지출되는 시점에서부터 판매된 제품의 대가가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해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만을 단순 대비하는 것은 기업실체의 재무적 성과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회계기간별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측정하기 위하여 발생과 이연의 절차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기간별로 관련시키고 동시에 자산과 부채의 증감도 함께 인식하게 된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 개념체계』, 2003. 11. 4, 18~19면 참조.

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여 승인 없이도 기업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⁷⁵⁾

6) 회계장부

기업은 회계장부를 종합계산장부와 세분계산장부로 나누어 갖추어야 한다. 종합계산장부는 경제거래를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분기일기장과 계시원장으로 나누며 세분계산장부는 계산대상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작성은 검토 확인한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복식기입방법으로 하고,¹⁷⁶⁾ 회계장부양식은 표준양식으로 한다. 기업은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맞추어야 한다.

회계장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틀리게 쓴 것은 붉은 색으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쓴다.
2. 회계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틀리게 쓴 것은 해당 분기를 취소하고 경제거래내용에 맞게 다시 분기하여 기록한다.
3. 회계장부에 올린 금액을 틀리게 쓴 것은 추가로 분기하여 바로 써 넣는다.
4. 수정한 곳에 회계원의 도장을 찍는다.

7) 재산의 평가

재산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은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한다.
2. 교환, 현물출자,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정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175) 『기업회계기준』 제7조 참조.

176)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투자재산, 유형 및 무형재산의 생산, 구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4. 취득원가는 재산형태별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나눈다.

즉, 재산평가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⁷⁾ 이러한 재산평가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¹⁷⁸⁾

8) 수입과 지출의 계산

수입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¹⁷⁹⁾

1. 상품, 제품의 판매수입은 그것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2. 위탁판매수입은 위탁받는 자가 위탁품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3. 건설물인도, 봉사제공, 예약판매 수입은 실행정도에 따라 한다.
4. 장기할부판매수입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그리고 비용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¹⁸⁰⁾

1. 생산원가는 제품생산과정에 실지 발생한 소비액에 기초하여 한다.
2. 판매원가는 판매수입과 관련되는 비용지출만을 포함시켜 한다.
3. 판매비와 관리비는 실지 발생한 지출액에 기초하여 한다.
4. 이자와 기타 금융비용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177)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19조에서는 유동재산 가운데 물자재산가격은 취득가격으로만 계산하며, 물자구입경비는 따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78)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참조.

179) 이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제37조(2001.12.27 삭제, 기업회계기준서 제 4호 “수익인식”으로 대체)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여,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80) 이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제39조~제43조, 기업회계기준서 및 원가계산준칙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9) 회계결산서류의 작성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¹⁸¹⁾

1. 재정상태를 재산, 채무, 자본으로 구분하며 재산과 채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재산과 고정재산, 유동채무와 고정채무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2.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재산, 채무, 자본의 해당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4. 대차대조표의 배열을 유동성배열법으로 한다.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¹⁸²⁾

181)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11조제1항과 매우 유사하다.

제11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82)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35조의 주요 골자를 포괄하고 있다.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손익을 판매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기업소득세덜기전손익¹⁸³⁾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한다.
2. 수입과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고 수입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수입과 비용을 발생기간별로 나누어 처리한다.
4. 수입과 비용의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등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¹⁸⁴⁾

1. 이익처분정형을 미처분이익액, 자체기금인입액, 이익처분액, 다음년도 조월이익액¹⁸⁵⁾으로, 손실처리정형을 미처리손실액, 손실처리액,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한다.
2. 미처분이익액과 자체기금인입액의 합계를 이익처분액과 다음연도 조월이익액의 합계와 대비하고 미처리손실액을 손실처리액과 다음연도 조월손실액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이익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현금유동표¹⁸⁶⁾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¹⁸⁷⁾

1. 현금유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에 따라 구분한다.
2. 현금의 기초잔고와 기간증감액을 합계하여 기말잔고로 표시한다.
3. 현금수입과 지출항목을 증가와 감소에 따라 상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183) '기업소득세차감전손익'을 말한다.

184)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제5장의 제76조 이하 및 기업회계기준서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골자는 매우 유사하다.

185) '이월이익액'을 의미한다.

186) 우리나라에서는 '현금흐름표'라고 한다.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조달한 현금 내역과 조달된 현금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하는 운용내역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이다. 기입되는 내용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유입과 지출내역을 제품의 생산과 상품의 구매 및 판매 등과 같은 영업활동, 현금의 대여와 회수,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과 같은 투자활동, 그리고 현금의 차입 및 상환, 주식발행이나 배당금 지급 등과 같은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995년부터 기업들이 종래의 재무상태 변동표 대신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87)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제6장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계결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연관시켜 검토 확인하고 종합편찬한다.
2. 업종에 따르는 원가명세서를 첨부한다.
3. 당해년도와 지난년도의 회계자료들을 비교하여 표시한다.
4.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계시식으로 한다.
5.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회계내용에 대하여서는 해석을 첨부한다.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월, 분기, 반년, 연간으로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월, 분기, 반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¹⁸⁸⁾에 따라 작성한다(제30조).¹⁸⁹⁾

회계결산서의 작성기일은 다음과 같다.

1. 월회계결산서는 다음달 6일까지
2. 분기회계결산서는 분기가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3. 반년회계결산서는 반년이 지난 다음 30일까지
4.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60일까지

회계결산서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하며, 이들은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60일 안으로 연간회계결산서를 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에 제출하여 회계검증을 받아야 하며,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¹⁹⁰⁾ 그리고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의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88) 회사의 '정관'을 의미한다.

189) 이 조항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21조의 “기업은 반년, 연관을 주기로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용상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연간회계결산서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규약, 즉 정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의 규정보다는 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0) 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 회계검증원 및 회계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10) 부당계산의 금지

회계계산과정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채무, 자본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2.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3. 비용, 원가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4. 이윤계산, 이윤분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고 허위이윤을 조성하거나 이윤을 숨기는 행위
5. 기타 공업지구 회계관련법규를 어기는 행위

(3) 회계문건

1) 회계문건의 종류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하며, 회계문건의 양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규정된 양식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계서류는 경제거래를 반영하는 회계계산의 기초물건으로서, 증표, 전표, 분기표, 집계표 같은 것이 속한다.

회계서류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의 제목
2. 발행번호와 날짜
3.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같은 경제 거래근거와 내용
4. 경제거래용도
5.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
6. 발행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2) 회계장부

회계장부는 회계서류에 반영된 경제거래를 일정한 양식 또는 계산표에 기록계산하는 회계문건이며, 분기일기장, 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 같은 것이 속한다.

회계장부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는 회계연도, 장부이름, 계시번호, 기업명칭 같은 것을 밝힌다.
2. 첫 페이지에는 목록을 쓰고 목록별 페이지번호를 밝힌다.
3. 둘째 페이지부터 번호를 쓰고 기록하는 회계서류의 날자와 분기표 번호, 경제거래내용과 금액 같은 것을 밝힌다.
4.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부의 마감을 확인한 회계부서책임자의 도장을 찍는다.

3) 회계결산서

회계결산서는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주기별로 기업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손익처분, 현금유동의 결과와 원인을 반영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결산서에는 결산서, 결산서주해, 재정상태설명서가 속한다.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자료를, 재정상태 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이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산상의 재무제표 요구는 자본주의사회의 기업회계기준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¹⁹¹⁾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는 회계결산문건으로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표를 기본표로 하고 그를 분석하는 부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나 현금유동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¹⁹²⁾

191)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5조 참조.

192)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4) 회계문건의 보존

회계문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¹⁹³⁾

1. 회계서류 5년
2. 회계장부 10년
3. 연간회계결산서 10년
4.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른다.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서는 이와 달리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연간회계결산서, 고정재산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고 규정하여 연간회계결산서의 경우 기업 존속기간까지 계속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¹⁹⁴⁾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서류는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날부터 한다.
2. 회계장부는 장부를 마감한 날부터 한다.
3.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은 날부터 한다.

회계문건은 회계부서책임자의 책임밑에 해당 기업에 보관하며, 통합, 분리, 해산되는 기업은 해당 이사회에서 보관인과 보관장소를 정한다.

(4)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 회계감독부서 및 방법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하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는 기업의 회계감독사업을 담당할 감독부서를 둘 수 있다.

193) 회계문건의 보존연한에 관하여 북한의 회계법에서는 단순히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9조에서는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존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94)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제10조 참조.

회계감독은 회계결산서와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기업의 회계사업정형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기업 내의 회계업무관리

회계규정은 기업 내부에 회계검증제도를 따로 두도록 하고있는데, 기업은 종합계산장부작성업무와 재산보관업무, 내부회계검증업무를 분리시키며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 재산처분, 자금공급 같은 중요경제업무를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¹⁹⁵⁾

그리고 기업은 출납업무와 회계장부기록계산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를 겸임시키지 못하도록 겸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조동,¹⁹⁶⁾ 동원, 병치료, 해임 같은 사유가 있는 회계원은 제3자의 입회밑에 회계사업을 인계하여야 한다.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입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입회는 기업의 책임자가 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된다. 그런데 북한의 『회계법』에서는 회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분석제도를 두고 있고(회계법 제3장), 또한 회계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통상 기업의 정관에 기술되거나 자율에 맡겨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¹⁹⁷⁾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이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로 생각된다.

195) 구체적인 회계기준이 발표되면 이러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6) 북한에서는 자리의 '이동' 즉, 전보를 의미한다.

197)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3년 12월 11일 신설되었으며, 역시 주식회사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회계업무집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킨다.¹⁹⁸⁾

그리고 회계결산서 작성에서 중요자료를 누락시켰거나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6개월부터 1년까지 업무를 중지시킨다. 돈, 물품을 받고 사실과 어긋나게 회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업무를 중지시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위반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회계결산서를 사실과 어긋나게 작성하였거나 의무적인 회계검증을 거절,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였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업이 연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 계산,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위법적인 회계계산을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그리고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보낸 다음 7일이 지난날부터 한다.

회계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38조에서는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5,000원~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간략하게 규정한 데 반하여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198) 회계업무집행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해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자명한 법적 원리라고 할 것이나 적법한 회계업무의 집행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은 장절 구분 없이 총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¹⁹⁹⁾ 그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명과 적용대상

제1조에서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자본조성과 리용, 리윤분배, 자본청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재정관리를 규범화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엄정하게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이 기업재정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영리활동을 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이며, 이 기업은 기업재정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자본과 투자

기업은 자본조성을 출자, 신용, 증여, 이윤저축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며, 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등록자본은 자본총액의 10%이상으로 하며, 기업은 자본총액이 늘어나는데 맞게 등록자본을 늘여야 한다.

기업은 투자를 화폐재산, 유형재산, 무형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폐재산의 투자는 전환성외화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형재산의 투자액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 수 없다.

투자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199) 북한 영역 내에서는 회계법의 제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적 실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개성공업지구에서는 『회계규정』보다는 오히려 『기업재정규정』의 적용을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정수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화폐재산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입금시켰을 때
2. 부동산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유형재산은 공업지구에서 정해진 수속을 끝냈을 때
4. 무형재산은 도입 또는 이용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하고, 국제시장 가격보다 낮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3) 자산의 내용연한과 감가상각²⁰⁰⁾

1) 유형재산

유형재산의 내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축물은 20년 이상
2. 철도차량, 선박과 기계 같은 생산설비는 10년 이상
3.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수송수단은 5년 이상
4. 전자설비와 취득원가가 300US\$ 이상인 공구, 비품은 3년 이상

그리고 유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형태와 이용방식, 과학기술발전영향 같은 것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재산의 내용연한이 끝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이하로 평가할 수 없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를 5%이하로 평가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무형재산

무형재산의 내용연한은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무형재산의 내용연한은

200)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는 감가상각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18조 참조.

예상수익기간으로 하며 예상수익기간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무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무형재산의 잔존가치는 영으로 한다.²⁰¹⁾

다만, 기업은 경영활동에 이용하지 않는 고정재산과 건설 중에 있거나 완성하지 못한 고정재산, 시일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변칙처리의 금지

기업재정규정 제15조에서는 “기업은 물품을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한 제품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²⁾

또한 원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지출 또는 손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산의 구입을 위한 자본지출
2.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3. 일반이자율보다 높은 이자
4.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사용료
5. 대외투자 및 관련기업을 대신하여 지출된 관리비
6. 기준을 초과한 회수불가능채권 및 대외사업비
7. 몰수당한 재산손실액, 위약금, 연체료, 벌금, 보상금
8. 당기순이익으로 적립한 예비기금
9.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

이러한 방식에 의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금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분식회계를 막고, 기업 이익의 유출을 줄여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01) 즉, 무형재산의 경우 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된다.

202)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덤핑의 금지 등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개성공업지구의 총생산 및 자산이 변칙적인 거래로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연구개발비 및 대손충당금의 설정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이며,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회수불가능한 판매채권, 대부금, 미수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으로서, 일반기업은 당해년도말 채권잔고의 1%, 금융기업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근로인력 관련 사항²⁰³⁾

기업은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퇴직보조금²⁰⁴⁾을 주어야 한다. 퇴직보조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월노임에 일한 해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퇴직금 계산방식과 차이가 없다.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은 퇴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으로서 기업은 1년이상 일한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지불하는 월노임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종업원의 노임을 공업지구 종업원월최저노임보다 낮지 않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노임은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기업은 관리성원의 노임기준을 세금납부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지불하여야 한다.²⁰⁵⁾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노임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203) 개성공업지구의 근로인력에 관해서는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리성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종업원은 북한측의 노무자, 관리성원은 주로 남한을 비롯한 투자기업측의 인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204) 우리나라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205) 이 규정도 관리성원의 노임으로 인해 기업의 과도한 지출 유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²⁰⁶⁾을 줄 수 있으며, 종업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전액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리고 기업이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상금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넣어 계산할 수 없다. 이처럼 종업원과 관리성원 간에 상금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상호간의 위화감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7) 기타 지출, 적립 및 상환

기업재정규정 제25조에서는 기업의 대외사업비²⁰⁷⁾ 지출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생산부문, 상업부문의 기업은 순판매액이 20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0.5%를, 200만US\$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0.3%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 금융, 교통운수 같은 기타 봉사부문의 기업은 순영업액이 7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1%를, 70만US\$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0.5%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당기순이익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 수 있다.²⁰⁸⁾

그리고 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예비기금과 이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원천이 있을 경우 자체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체기금은 확대재생산, 기술발전 같은 기금으로 쓸 수 있다.

기업은 차입금을 정한 기간 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를 찾지 못하여 상환할 수 없는 차입금은 예비기금에 포함시킨다.

기업은 채무를 당해년도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06) '상여금'을 의미한다.

207) 우리나라의 '접대비'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0.2% 이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208) 예비기금의 한도와 적립비율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22조제3호에서는 "합영기업의 예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일정한 몫이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익의 일정한 비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불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 감독 및 제재

이 규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하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재정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이하 ‘회계검증규정’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 규정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제정된 규정으로서, 총 4장 4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제3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제4장 감독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이하 ‘부기검증규정’이라 한다)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⁹⁾

(1) 일반규정

회계검증규정은 제1조에서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기검증규정의 목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²¹⁰⁾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회계검증의 당사자, 즉 주체는 공업지구에 설립한 회계검증사무소가 하도록 하고,²¹¹⁾ 회계검증사무소는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형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기검증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업무사항이

209)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부기검증의 일반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 따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0) 부기검증규정 제1조에서는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1) 이는 부기검증규정 제9조에서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 시, 군에 조직하거나 지구별로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며,²¹²⁾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구성되는 감정평가법인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으로 되어있다.²¹³⁾ 북한에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을 함께 두도록 하여 감정평가업무를 겸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계검증규정 제3조에서는 회계검증의 준거규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규정과 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금규정같은 관련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검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검증의 대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 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 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하에서는 ‘기업’이라 한다)로서 이들은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2조의 회계대상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부기검증규정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따른 회계대상에 관한 명시적인 구분은 두지 않고 있다.

회계검증규정 제5조에서는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당할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계검증사무소의 독립성을 재차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212) 다만, 부기검증규정 제22조에서 “부기검증원은 투자액, 재산가격, 재산평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기검증사무소에 감정평가원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기검증원이 감정평가의 업무도 수행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3) 감정평가사제도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에 공포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 자격을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인 ‘회계검증준칙’이 작성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²¹⁴⁾

(2)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²¹⁵⁾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설립신청서의 심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공업지구 관리기관으로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²¹⁶⁾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 남측에서도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협의 하에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개성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개이상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에 회계검증사무소를 설립하려는 회계검증조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설립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경우 기본규약, 사무소성원의 자격, 경력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신청서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기본업무, 기구와 정원수, 책임자와 성원의 이름, 자격, 자본금총액, 존속기간, 해산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²¹⁷⁾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중앙공

214) 이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의 세부기준으로는 『기업회계기준』(회계규정 제8조에 의거)이,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의 세부기준으로는 『회계검증준칙』(회계검증규정 제6조에 의거)이 작성되도록 체계화되는 셈이다.

215)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의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설립승인기관이 어디인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제10조에서 “부기검증사무소창설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설립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 즉,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담당하는 것은 상호 부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16)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북측의 법인으로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idmac.com> 참조.

217)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는 이렇게 상세한 신청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날을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일로 한다. 부기검증규정의 경우에는 설립의 심의·결정에 관한 기한은 두지 않고, 설립등록에 관하여 “부기검증사무소창설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등록기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²¹⁸⁾

회계검증규정 제11조에서는 회계검증사무소의 재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규약, 기구와 정원수, 기본업무가 달라진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2.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3.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4.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5.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6. 이밖에 회계관련법규에 지적된 업무

이와 같은 업무영역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기업의 해산과 파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건의 정확성을 확정하는 사업과 또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등을 업무로 규정하고, 감정평가원에 의한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²¹⁹⁾ 특히 앞에

218)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10조 참조.

219)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의 회계검증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정하는 사업이다. 부기 계산,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도 부기검증에 포함된다.

제14조 부기검증은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계산서, 리윤 및 분배 계산서,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서, 관리비계산서, 송금환자계산서와 같은 계산문건), 투자 몫 및 투자실적과 관련한 문건, 로임계산문건, 세금계산문건, 원금의 상환과 리자계산지불 문건, 이밖의 부기계산문건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검증원 이외에 감정평가원을 두도록 하고,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까지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영역으로 명기한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한 것이다.

회계검증사무소에는 3명 이상의 회계검증원과 1명 이상의 감정평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²²⁰⁾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이 아래부터는 회계검증원이라 한다)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문에서 3년 이상 일한 자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는 회계검증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감정평가원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사'에 해당하는데, 감정평가원을 1인 이상 두도록 한 것은 회계검증사무소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회계검증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부기검증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²²¹⁾

회계검증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같은 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장부와 현물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회계검증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규정 제15조에서는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 그리고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정형을 해당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기록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에 대하여 한다. 기업의 해산과 파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건의 정확성을 확정하는 사업도 부기검증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기검증규정 제22조의 내용을 감안할 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기검증원이 감정평가의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20) 부기검증규정에서는 감정평가원에 관한 언급은 없고, 3~10명의 부기검증원만을 두도록 하고 있다(『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8조 참조).

221)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11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을 받은 공화국국민이 될 수 있다.

제12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될 수 있다. 부기검증원자격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위원회가 준다.

제13조 부기부문의 학위, 학직 소유자와 명예칭호를 받은 일군, 3급이상의 급수를 가진 부기부문의 교원, 연구사, 경제사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부기검증원의 자격을 가진다.

회계검증원은 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 검증보고서의 부류, 검증과 관련한 의견, 보고날자, 회계검증원의 이름 같은 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회계검증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회계검증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검증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규정은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검증원의 윤리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부기검증규정의 내용과는 약간 초점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즉 부기검증규정 제23조에서는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이 끝났을 경우 부기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기검증보고서에는 부기 계산과 결산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당하면 의견상이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정요구를 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기보다는 단지 부당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만 검증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규정이 보다 합리적인지 여부는 한 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직접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의미상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관리감독적 편의성 측면을 보다 고려한 것이며, 또한 부기검증규정과 달리 결산검증 외에 투자검증, 청산검증 그리고 감정평가 등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지구관리기관과의 연계성과 협조관계를 보다 강조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회계검증사무소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회계검증을 도와주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마치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리한 회계감독기관의 하나로 오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²²²⁾

222)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부정행위등의 보고)에서는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 상담과 관련한 검증료 또는 봉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증료와 봉사료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²²³⁾ 회계검증규정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부기검증 규정에서는 이러한 요금 수입의 지출과 회계검증사무소의 회계결산 및 보고에 대해서도 규정해 두고 있다.²²⁴⁾

회계검증규정 제21조에서는 손해보상준비금과 손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²⁵⁾ 즉,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당기순이익의 10%를 직전 회계연도 총수입액의 10%가 될 때까지 손해보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검증사무소는 손해보상준비금을 손해보상에만 써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된다. 손해보상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쓰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기업은 회계검증을 제때에 정확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의 내용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 등이 속한다.²²⁶⁾ 회계검증사무소는 투자검

제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감독기관이 아니라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 간에 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3)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25조의 내용과 같으나 관련한 요금의 결정기관으로 부기검증규정에서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24)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26조 부기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료금은 부기검증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부기검증사무소는 분기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분기 첫달 20일까지, 연간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해 2월 15일까지 중앙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225)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서는 손해보상준비금의 적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26)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서는 대체로 결산검증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고, 투자검증, 청산검증에 관해서는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 이렇게 결산검증 이외에 투

증보고서, 결산검증보고서, 청산검증보고서의 사본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해당 검증을 끝낸 날부터 7일 안으로 내야 한다.

1) 투자검증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기업, 총투자액의 10%이상을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자증서의 발급, 이윤분배, 투자상환 같은 것을 할 수 없다.

투자검증은 기업이 작성한 투자보고서에 대하여 한다. 투자보고서에는 출자상태표와 화폐재산출자명세표, 현물재산출자명세표, 부동산출자명세표, 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같은 것이 속한다.

기업창설투자에 대한 검증은 조업을 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통합, 분리에 대한 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끝낸 날부터 2개월 안으로, 재투자에 대한 검증은 해당투자를 끝낸 날부터 1개월 안으로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중고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기업은 중고설비의 생산년월일과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내용년한, 사용한 기간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문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특히 강조하는 것은 중고설비투자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그 가액의 평가와 관련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자검증제도는 투자의 내용 및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²²⁷⁾

2) 결산검증

결산검증은 기업의 월, 분기, 반년,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기

자검증, 청산검증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감정평가원에 의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키며, 회계검증 결과에 대해 공업지구세무소, 공업지구관리기관, 나아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투자, 경영, 청산에 검증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여 투자기업들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업지구 설치로 인한 과실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7)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은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²²⁸⁾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2개월안으로 연간회계결산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회계업무량이 특별히 많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승인을 받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으로 연간회계결산서를 낼 수도 있다.

회계검증원은 결산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회계검증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²²⁹⁾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결산서에 대한 설명서와 재정상태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회계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2. 주요 회계정책 및 예측과 그 변경정형
3. 우발사항과 결산후 발생한 경제거래정형
4. 중요재산의 처분정형
5. 기업의 통합, 분리정형
6. 회계결산서의 중요항목
7. 회계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생산 및 경영상태
2. 이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3. 자금의 증감과 회전상태
4. 재정상태, 경영성적, 현금유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대차대조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으로 기업의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끝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검증을 끝

228)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서는 회계결산검증을 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앞의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과 관련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29) 세무조정계산서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확정한 서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무소는 각종 회계검증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회계 위법사항의 보고, 그리고 세금문제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연간회계결산서와 연간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와 연장기간을 공업지구세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²³⁰⁾

3) 청산검증

청산검증대상은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청산보고서이다. 청산보고서에는 청산재정상태표, 채권채무명세표, 자금원천분배표, 재산실사표, 국가납부표같은 것이 속한다.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은 청산사업을 끝낸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청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산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에 조직된 청산위원회의 사업을 종결할 수 없으며 기업등록을 삭제할 수 없다.

(4) 감독통제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²³¹⁾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회계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사무소가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회계검증에서 엄중한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²³²⁾

230) 연간회계결산서의 검증이 지연된 경우 공업지구세무소에 통지하는 것은 회계검증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작성되면 바로 공업지구세무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검증이 지연된 경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와 년간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1)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6조에서 부기검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특정한 공업지구, 즉 개성공업지구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32) 이 규정의 경우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의 주체가 회계검증규정 제37조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 엄중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그 하위기관인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회계검증에서 중요한 자료를 누락시켰거나 엄중한 착오를 일으킨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6개월이상 1년까지 중지시킨다. 또 돈이나 물품을 받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한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1년이상 중지시킨다. 회계검증원이 3회이상 업무중지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검증사무소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벌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업무기록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회계검증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1만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7일이 지난 날부터 한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주로 기업 회계담당자의 위법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회계검증규정에서는 주로 회계검증사무소와 회계검증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부기검증규정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와 벌금 이외에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할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³³⁾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규정 및 회계검증규정에서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행정적 제재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

233)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38조 및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28조 참조.

구 회계규정 상의 기업에 대한 벌금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검증규정 상의 회계검증사무소 및 회계검증원에 대한 벌금의 수준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과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³⁴⁾ 이것은 회계검증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회계계산 및 회계검증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과는 달리 회계검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신고와 청원, 그리고 협의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²³⁵⁾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측의 회계검증사무소와 남한측의 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즉, 2000년 12월 16일 체결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상의 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4.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에 대해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기준은 명확하게, 감독은 철저하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투자, 경영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세원의 확보, 그리고 자산의 반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철저하게 감독·통제하여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34) 각각의 벌금을 최소 및 최대로 나타내보면,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500US\$~1만5천US\$,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3,000US\$~1만5천US\$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5,000원~1만원,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500~2,000원이다. 즉,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규정에서 회계검증기관에 대한 처벌이 기업에 대한 처벌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나,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 규정들에서는 기업보다 회계검증기관에 대한 처벌이 더 중하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5)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29조 및 제30조 참조.

개성공업지구의 회계법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회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등과는 달리 대부분 남한측의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적용법규의 대부분을 남한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북한의 회계법이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규정들과 달리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규정들이 보다 자본주의적 회계원칙에 근접해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회계계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하고,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하고,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계산의 원칙들은 자본주의사회의 기업회계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손익거래에 의한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결산재무제표에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손익처분계산서나 현금유동표와 같은 문건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자료를, 재정상태 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이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산상의 재무제표 요구는 자본주의사회의 기업회계기준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회계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되어 더욱 이해하기가 쉽게 되었다. 즉, 회계법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등과 달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처분계산서, 수입, 비용, 자본, 이익 등의 용어가 새로이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등이 한국측 기업들을 주로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배려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 규정에서 아직도 분기일기장(분개장), 계시(계정), 재산(자산), 채무(부채), 조월이익(이월이익), 현금유동표(현금흐름표) 등에 있어서는 북한식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검증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관찰된다.

첫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7조에서 회계준거규정으로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하도록 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은 개성공업지구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업환경과 다름없이 만들겠다는 매우 상징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둘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8조에서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기업들의 회계 세부기준을 정하는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이 작성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제6조에서 회계검증준칙의 제정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6조에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인 ‘회계검증준칙’이 작성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

넷째, 회계검증규정 제5조에서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간섭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

당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계검증사무소의 독립성을 재차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회계검증규정 제15조에서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 그리고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회계기준에 대한 접근, 회계기준과 회계검증의 투명화가 실현됨으로써 향후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의거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검증규정에 의거한 『회계검증준칙』이 추가적으로 제정된다면 회계기준 및 검증에 대한 미비점이나 자본주의사회 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분쟁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회계 투명화의 반작용으로 감독과 통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몇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위법부당한 회계처리 및 회계검증에 대한 벌금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주로 기업 회계담당자의 위법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회계검증규정에서는 주로 회계검증사무소와 회계검증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부기검증규정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와 벌금 이외에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을 개선하여 벌금제도로 전환한 것은 물론 바람직한 것이고, 회계계산 및 회계검증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보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과하는 벌금의 수준이 너무 높아 기업과 회계검증사무소, 또한 기업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간에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회계검증사무소나 회계검증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검증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회계검증원이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타당한 규정으로도 생각될 수 있지만, 부기검증규정 제23조에서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이 끝났을 경우 부기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기검증보고서에는 부기 계산과 결산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당하면 의견상이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정요구를 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기보다는 단지 부당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만 검증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관리감독적 편의성 측면을 보다 고려한 것이며, 이로 인해 회계검증사무소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회계검증을 도와주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마치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리한 회계감독기관의 하나로 인식될 여지도 없지 않다.

셋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기업내 회계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내부의 회계검증제도(제47조), 회계, 출납, 문건보관업무의 겸임금지(제48조), 회계담당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제49조) 등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통상 기업의 정관에 기술되거나 자율에 맡겨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이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로 생각된다.

회계관리와 회계검증의 투명성을 위한 감독과 통제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업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검증준칙』의 제정과정에서 우리측과의 계속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검증기관, 즉 회

계검증사무소와 회계검증원의 자질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검증원에 대한 자격검증, 교육훈련,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회계검증사무소가 북한 당국과 기업간의 균형을 이루어 또 다른 감독관청으로 군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 3 절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 구조

과거 우리나라는 개성에서 전래되어 상인들 간에 전수되어온 우리 고유의 부기법인 사개송도치부법이라는 회계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개방의 물결과 함께 서양의 신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부터 서양의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었고, 일본의 침략에 의한 한일병합 이후 일본의 회계처리방식이 유입되어 사용되었다.²³⁶⁾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6월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보고의 형태로 공표한 『기업회계원칙』이다.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은 1958년 7월 2일 재무부 고시 제169호로 발표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1970년대 초반의 기업공개촉진정책에 따라 상장법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회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7월 18일에는 증권거래법 제126조의8(회계원칙)과 제126조의9(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 제7199호로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1975년 4월 17일에는 재무부령 제1098호로 『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이 공포되었다.²³⁷⁾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실무계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74년 6월 16일 의견서 제

236) 박정대, 김영훈, “한국과 북한의 회계기준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디지털경제연구』 제9권, 2004, 191면.

237)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2005. 1. 11, 13면 참조.

1호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회계처리를 시작으로 하여 1981년 12월 11일의 사례 135호까지 의견서 10개, 사례 135개를 발표하였다. 이 활동은 1980년 12월 31일자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부여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그 후 증권관리위원회는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정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업회계기준』(9장, 133조)을 1981년 12월 23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률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법조문의 형식으로 표시되었다.²³⁸⁾

1997년 12월 31일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법률 549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증권관리위원회는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 이양되었다. 1998년 1월 8일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4월 1일자로 기업회계기준 등을 다시 제정하였고 기업집단결합 재무제표준칙의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8년 12월 11일자로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²³⁹⁾

2000년 1월 12일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이 신설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한국회계연구원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27일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²⁴⁰⁾

현행 『기업회계기준』(2003.11.7 회계기준위원회 개정)은 총 8장 9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 제92조에

238)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15면 참조.

239)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18~19면 참조.

240)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2면 참조.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기준적용 및 해석상의 일관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발간하고 있다.²⁴¹⁾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법조문의 형식이 아니라 문단식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이 법조문의 형식을 유지함으로써 실무상 적용에 필요한 상세한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었고, 국제회계기준서(IAS)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계기준과의 비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²⁴²⁾ 따라서 현재 기업회계기준은 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형태로 제정·공표하며, 실무 적용상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적용의견서』 및 『질의회신요약』을 발표하고 있다.²⁴³⁾ 기준서 등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준칙』,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의 관련 내용이 조문화된 형태에서 각종 기준서 형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북한 회계법제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회계법제, 그 중에서도 개성공업지구의 회계법제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도 매우 근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회계법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회계기준의 제정 주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

241)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관련조항을 대체하며 그 일부가 된다. 『기업회계기준』 제92조제2항.

242)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3~4면 참조.

243) 통칭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하면 협의의 『기업회계기준』(1998.4.1 제정, 2003.11.7 개정)과 기타 회계처리기준 즉, 『기업회계기준』 제6조제1항의 연결재무제표준칙, 제6조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90조의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과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및 제92조의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회계기준』 제1조의2 참조.

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 규정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채택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²⁴⁴⁾

(2) 회계의 목적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회계규정의 사명에 대해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회계계산과 회계문건작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 제2조에서도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정보의 이용자²⁴⁵⁾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²⁴⁶⁾

244)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8조.

245) 기업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정보이용자는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을 말한다. 경영자를 제외한 기타 정보이용자는 투자자 및 채권자와 달리 기업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경영자는 재무제표의 작성자인 동시에 이용자로 볼 수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 11. 4, 4면 참조.

246)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도 “재무보고는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3) 회계의 일반원칙

회계의 일반원칙에 관하여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12조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표7>을 참조해 보면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을 많이 참고하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자료로 생각된다.

< 표 7 > 회계계산의 일반원칙 비교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12조	『기업회계기준』 제 3 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 12. 4, 2면 참조.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 회계처리상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회계관습의 존중

『기업회계기준』 제4조에서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관습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7조 제2문에서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회계관습에 대한 존중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5) 재무제표의 종류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회계결산에는 결산서, 결산서주해, 재정상태설명서가 속한다고 하고(제40조),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재정상태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이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제41조)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5조에서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관하여,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하고, 잉여금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6) 재무제표의 계산

재무제표 및 그 기본요소들의 계산에 관하여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재산의 평가, 수입 및 비용의 계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처분계산서 및 현금유동표의 작성 등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매우 간략하기는 하지만 거의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차후 북한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이를 비교하게 되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북한 회계법제의 평가와 시사점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실패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으며, 북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정은 곧바로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북한의 회계법제 발전과정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도입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주의적 회계제도기』,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기』, 『병존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해 보았다.

사회주의적 회계제도기(1945~1983)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한 지역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해 나갔던 북한정권 초기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이 경제개방을 시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합영법(1984. 9. 8 제정)을 제정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기(1984~2002)는 경제개방의 법적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합영법이 제정된 후부터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회계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2003. 3. 5 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병존기(2003~현재)는 2003년 최초의 회계관련 일반법인 『회계법』이 채택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병존기에 해당하는 현재, 북한의 회계법제는 북한 자체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되는 법(회계관련 일반법제)과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으로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회계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회계법제가 이처럼 이원화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은 다시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와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등)로 세분될 수 있다.

먼저, 회계관련 일반법제는 북한 자체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즉,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법으로 『회계법』이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예산회계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회계와 그 대상범위가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근거법으로는 합영법(1984년 제정), 합작법(1992년 제정), 외국인기업법(1992년 제정) 및 외국인투자은행법(1993년 제정) 등이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관련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이 존재하며, 부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그리고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과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등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방 초기에는 경제특구, 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특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을 제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등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고, 각 경제특구별로 지역적 특성, 외국인투자 유인대상, 주요 목적사업 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공통된 법체계를 적용하려던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합영법』, 『합작법』 등 일부 기본적인 법규를 제외하고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의 성격에 따라 각각 관련법과 시행규정을 정비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로 남한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특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반영한 회계법제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관련 법제의 근거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2003년 제정)을 두고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2005. 9.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회계관련 일반법제 중 『회계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로 크게 둘로 나누어 접근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중에서는 특히 최근에 정비된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를 다시 따로 떼어내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북한은 회계법의 제정을 계기로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회계관리의 투명화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으며, 그 시도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이고,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회계법 도입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조치 중 하나로서 재정위기의 극복을 목표로 하였다. 즉, 경제관리방식을 전환하여 국가가 모든 경제단위들의 재정계획을 직접 관리하던 방식에서 독립채산제 등 자율적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대신 회계법 제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번 수입’ 중에서 국가납부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회계법에는 공공부문의 회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직 실제로 전 국가기관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계단위에서만 실시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을 포함한 전 기관, 기업소, 단체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회계법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천명함으로써 전 공공부문의 회계로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통해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더욱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의 회계법은 동시에 몇 가지 과제도 남겨 놓고 있다. 즉, 회계법의 제정에 따른 시행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며, 지도통제적 회계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고, 법문 및 법령용어의 불명확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재정법과 회계법 상의 일부 조문상의 중복, 객관적인 회계검증제도의 도입,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적합한 회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것 등이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회계규정, 특히 그 중에서도 세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그리고 부기검증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상당히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북한 법제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비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부기계산규정은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부기검증규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는 북한의 기준에 의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민으로 구성된 부기검증원이 부기 계산과 결산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성한 부기검증보고서에 의하여 검증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회계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서는 모두 국가 재정기관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은 북한 당국의 의지에 의하여 마음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회계규정들은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관련 규정들 즉,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등에 비해서는 자율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관련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관련 규정들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에 대해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기준은 명확하게, 감독은 철저하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하

여 투자, 경영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세원의 확보, 그리고 자산의 반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철저히 감독·통제하여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개성공업지구의 회계법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회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부기검증규정 등과는 달리 대부분 남한측의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적용법규의 대부분을 남한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북한의 회계법이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규정들과 달리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규정들이 보다 자본주의적 회계원칙에 근접해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회계계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결산재무제표에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손익처분계산서나 현금유동표와 같은 문건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회계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되어 더욱 이해하기가 쉽게 되었다.

다음으로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검증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관찰된다.

첫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7조에서 회계준거규정으로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채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하도록 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8조에서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셋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제6조에서 회계검증준칙의 제정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회계검증규정 제5조에서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간섭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회계검증규정 제15조에서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회계기준에 대한 접근, 회계기준과 회계검증의 투명화가 실현됨으로써 향후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의거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검증규정에 의거한 『회계검증준칙』이 추가적으로 제정된다면 회계기준 및 검증에 대한 미비점이나 자본주의사회 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분쟁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회계 투명화의 반작용으로 감독과 통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몇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위법부당한 회계처리 및 회계검증에 대한 벌금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부과하는 벌금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기업과 회계검증사무소, 또한 기업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간에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회계검증사무소나 회계검증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검증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회계검증원이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관리감독적 편의성 측면을 보다 고려한 것이며, 이로 인해 회계검증사무소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회계검증을 도와주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마치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리한 회계감독기관의 하나로 인식될 수도 있다.

셋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기업내 회계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내부의 회계검증제도(제47조), 회계, 출납, 문건보관업무의 겸임금지(제48조), 회계담당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제49조) 등이다.

회계관리와 회계검증의 투명성을 위한 감독과 통제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업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검증준칙』의 제정과정에서 우리측과의 계속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검증기관, 즉 회계검증사무소와 회계검증원의 자질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검증원에 대한 자격검증, 교육훈련,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회계검증사무소가 북한 당국과 기업간의 균형을 이루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회계법』 제정에 따라 그 세부규정인 회계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 일정부분 부합되는 회계기준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회계법제는 시기별로, 법제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요소로부터 탈피하여 국제적인 회계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세계회계기준의 통일이 전망되고 있다.²⁴⁷⁾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도 현재의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규정에 따르도록 하지 말고 국제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기업운영에 투명성이 증대되며, 이 경우 많은 남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47) 최근 국제적인 회계제도 연구에 있어서 핫이슈 중의 하나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화단계로부터 수렴에로의 이행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계기준의 국제적 수렴이 회계연구에 있어 핫이슈가 된 이유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화(harmonization)를 추진하는 주체였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2001년 4월 조직의 개혁을 통하여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목적으로서 각국의 국내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수렴(convergence)시킨다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다.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화와 수렴을 구분하면, 조화화는 각국이 갖고 있는 회계기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각국에 있어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가능한 대체안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는 특징을 갖는 개념이다. 반면, 수렴은 각국에 존재하는 회계기준에 대하여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배제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하나의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함강국, “회계기준의 국제적 수렴에 대한 각국의 수용방안”,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제281호, 2004. 5, 74~75면 참조.

【 부 록 】

1. 회계법

주체 92(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채택
주체 92(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4호로 승인

제 1 장 회계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3 조 회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눈다.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한다.

제 4 조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돈계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5 조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제 6 조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제 7 조 국가는 회계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회계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부 록】

제 8 조 국가는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9 조 이 법은 회계를 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회계계산

제10조 회계계산은 자금의 변동을 일상적으로 기록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산단계에 따르는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회계계산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 저장품, 로동보수, 비용지출과 원가, 생산물, 상품, 물자, 화폐재산, 채권채무, 자금수입과 지출, 경영수입과 지출 및 분배,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회계계산은 지방재정기관이 한다. 지방재정기관은 지방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문회계계산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부문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회계계산은 은행기관과 보험기관이 한다. 은행기관은 무현금결제업무, 신용업무, 발권 및 현금출납업무, 대외결제 및 신용업무에 대하여, 보험기관은 보험재정상태와 보험업무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회계계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 외화수지, 국제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계산은 경상계산과 결산으로 나누어 한다. 경상계산은 경제거래가 생길 때마다, 결산은 주기에 따라 한다.

제17조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와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한다. 회계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 경상계산은 시초서류 또는 아래 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경제거래내용과 맞지 않는 시초서류, 회계보고문건은 경상계산의 기초자료로 쓸수 없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을 종합계산과 세분계산, 시순식계산, 체계식계산, 현물계산과 금액계산을 결합하여 하여야 한다. 경상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상계산결과검토는 시순식계산자료와 체계식계산자료,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틀린 자료는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쳐야 한다.

제21조 회계결산은 경상계산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에 앞서 빠진 거래를 등록하고 미결거래를 청산하며 재산실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회계결산서의 제출은 다음의 기관에 한다.

1. 경영회계결산서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2. 지방회계결산서는 상급기관에 한다.
3. 부문회계결산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에 한다.
4. 금융회계결산서는 해당 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5. 중앙회계결산서는 내각에 한다.

제24조 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비준받지 않은 회계결산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부 록】

제 3 장 회계분석

제25조 회계분석을 바로 하는 것은 경제실태를 파악하고 재정적 타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금보장과 리용의 효과성, 경영수지, 예산집행정형, 화폐류통, 외화수지, 국제수지 같은 것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분석은 회계결산서에 기초하여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분석에 경상계산자료, 계획 및 통계자료, 업무계산자료, 기술경제적기준자료 같은 것도 리용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분석은 대비분석, 분류분석, 런던분석의 방법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석목적에 맞게 그 수법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이 끝나면 분석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재정적 타산과 생산 및 재정총화자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분석주기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계검증

제31조 회계검증은 경영회계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회계검증은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32조 회계검증은 경영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검증에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회계서류도 볼 수 있다.

제33조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에 나가 할 수도 있다.

제34조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간에 회계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5조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에 검증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은 회계결산서의 표와 자료의 정확성, 연관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결과를 제때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검증과정에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고치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주어야 한다.

제37조 회계검증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에 따라 주기밖에도 회계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 회계검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료를 물어야 한다. 검증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 5 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계산, 분석, 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문건을 편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화재, 자연재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문서고나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일군을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사업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회계일군은 회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계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부 록】

제44조 회계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는 회계일군이 임명, 해임, 동원, 병치료 같은 원인으로 회계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한다. 인계인수는 제3자의 립회밀에 서면으로 한다.

제45조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8조 회계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주체94(2005)년 6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회계계산과 회계문건작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회계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은 회계를 한다. 총 투자액이 100만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되는 지사, 영업소와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도 회계를 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계업무) 기업의 회계업무는 회계원, 계산원, 출납원 같은 회계일군이 한다.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업무를 위탁할수도 있다.

제 4 조 (회계화폐와 단위) 공업지구에서 회계화폐는 US\$로 한다. 기업의 경제거래규모에 따라 화폐단위를 천, 만, 백만으로 할수 있다.

제 5 조 (회계년도)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창설된 기업의 회계연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이다.

제 6 조 (회계문건의 작성언어) 회계문건의 작성은 조선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회계문건을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 7 조 (회계준거규정, 회계관습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회계는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

【부 록】

규정에 준하여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 8 조 (기업회계기준의 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책임자가 진다. 기업책임자는 위법적인 회계업무를 지시할수 없다.

제 2 장 회계계산

제10조 (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회계서류를 만들고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장부에 기록계산하며 주기별로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산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1조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이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화폐자금을 입금하였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2.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인수하였을 경우
3. 재산을 인수 또는 발송하였을 경우
4.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거나 그것을 청산하였을 경우
5. 자본금, 기금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6. 수입 또는 비용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손익을 확정하거나 분배할 경우
8. 기타 회계계산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회계계산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리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제13조 (회계서류의 작성) 회계서류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록을 검은색으로 한다.
2. 경제거래가 있는 즉시에 한다.
3. 양식에 따르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4. 금액을 조선말로 복기한다.
5. 경제거래를 지시하거나 집행을 책임진 자의 도장을 찍거나 그가 수표한다.

제14조 (회계서류의 발행, 접수) 기업은 경제거래를 시작하면 회계서류를 발행하거나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회계서류는 회계원이 보관한다.

제15조 (회계서류의 검토, 처리) 회계서류를 접수한 기업은 양식, 기록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효력을 가지지 못한 불비한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돌려보낸다.

제16조 (회계서류의 수정 및 재작성) 불비한 회계서류를 돌려 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금액을 틀리게 쓴 회계서류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계시의 리용)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정한 회계계시를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경제거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회계계시로, 일반경제 거래는 유사한 회계계시에 합쳐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장부의 준비) 기업은 회계장부를 종합계산장부와 세분계산장부로 나누어 갖추어야 한다. 종합계산장부는 경제거래를 시간적으로,

【부 록】

내용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분기일기장과 계시원장으로 나누며 세분계산장부는 계산대상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장부의 작성) 회계장부의 작성은 검토 확인한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회계장부양식은 표준양식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장부와 현물의 대조확인) 기업은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맞추어야 한다.

제21조 (회계장부의 수정) 회계장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장부를 마감하기전에 틀리게 쓴것은 붉은 색으로 두줄을 긋고 다시 쓴다.
2. 회계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틀리게 쓴것은 해당 분기를 취소하고 경제거래내용에 맞게 다시 분기하여 기록한다.
3. 회계장부에 올린 금액을 틀리게 쓴것은 추가로 분기하여 바로 써넣는다.
4. 수정한 곳에 회계원의 도장을 찍는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재산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은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한다.
2. 교환, 현물출자,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정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3. 투자재산, 유형 및 무형재산의 생산, 구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리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4. 취득원가는 재산형태별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나눈다.

제23조 (수입의 계산) 수입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품, 제품의 판매수입은 그것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2. 위탁판매수입은 위탁받는 자가 위탁품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3. 건설물인도, 봉사제공, 예약판매 수입은 실행정도에 따라 한다.
4. 장기할부판매수입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제24조 (비용의 계산) 비용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산원가는 제품생산과정에 실지발생한 소비액에 기초하여 한다.
2. 판매원가는 판매수입과 관련되는 비용지출만을 포함시켜 한다.
3. 판매비와 관리비는 실지 발생한 지출액에 기초하여 한다.
4. 리자와 기타 금융비용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제25조 (대차대조표의작성)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상태를 재산, 채무, 자본으로 구분하며 재산과 채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류동재산과 고정재산, 류동채무와 고정채무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리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2.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재산, 채무, 자본의 해당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4. 대차대조표의 배열을 류동성배렬법으로 한다.

제26조 (손익계산서의작성)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익을 판매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기업소득세덜기전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한다.
2. 수입과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고 수입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수입과 비용을 발생기간별로 나누어 처리한다.
4. 수입과 비용의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7조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리익처분정형을 미처분리익액, 자체기금인입액, 리익처분액, 다음년도 조월리익액으로, 손실처리정형을 미처리손실액, 손실처리액,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한다.
2. 미처분리익액과 자체기금인입액의 합계를 리익처분액과 다음연도 조월리익액의 합계와 대비하고 미처리손실액을 손실처리액과 다음연도 조월손실액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리익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부 록】

제28조 (현금류동표의작성) 현금류동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류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에 따라 구분한다.
2. 현금의 기초잔고와 기간증감액을 합계하여 기말잔고로 표시한다.
3. 현금수입과 지출항목을 증가와 감소에 따라 상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9조 (회계결산서의작성) 회계결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리익처분계산서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련관시켜 검토 확인하고 종합편찬한다.
2. 업종에 따르는 원가명세서를 첨부한다.
3. 당해년도와 지난년도의 회계자료들을 비교하여 표시한다.
4.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계시식으로 한다.
5. 잘못 리해할수 있는 회계내용에 대하여서는 해석을 첨부한다.

제30조 (회계결산서의작성주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년간회계결산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월, 분기, 반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라 작성한다.

제31조 (회계결산서의작성기일) 회계결산서의 작성기일은 다음과 같다.

1. 월회계결산서는 다음달 6일까지
2. 분기회계결산서는 분기가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3. 반년회계결산서는 반년이 지난 다음 30일까지
4.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60일까지

제32조 (회계결산서에대한 수표) 회계결산서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한다.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3조 (회계검증의무) 기업은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60일안으로 년간 회계결산서를 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년간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의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제34조 (부당계산의 금지) 회계계산과정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채무, 자본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2.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3. 비용, 원가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4. 리윤계산, 리윤분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고 허위리윤을 조성하거나 리윤을 숨기는 행위
5. 기타 공업지구 회계관련법규를 어기는 행위

제 3 장 회계문건

제35조 (회계문건의 구분과 양식)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한다. 회계문건의 양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 (회계서류의 정의와 구분) 회계서류는 경제거래를 반영하는 회계계산의 기초물건이다. 회계서류에는 증표, 전표, 분기표, 집계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7조 (회계서류의 반영내용) 회계서류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의 제목
2. 발행번호와 날자
3.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같은 경제 거래근거와 내용
4. 경제거래용도
5.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
6. 발행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제38조 (회계장부의 정의와 구분) 회계장부는 회계서류에 반영된 경제거래를 일정한 양식 또는 계산표에 기록계산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장부에는 분기일기장, 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 같은것이 속한다.

【부 록】

제39조 (회계장부의 반영내용) 회계장부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는 회계년도, 장부이름, 계시번호, 기업명칭 같은것을 밝힌다.
2. 첫페이지에는 목록을 쓰고 목록별 페이지번호를 밝힌다.
3. 둘째페이지부터 번호를 쓰고 기록하는 회계서류의 날자와 분기표 번호, 경제거래내용과 금액 같은 것을 밝힌다.
4. 마지막페이지에는 장부의 마감을 확인한 회계부서책임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40조 (회계결산서의 정의와 구분) 회계결산서는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주기별로 기업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손익처분, 현금류동의 결과와 원인을 반영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결산서에는 결산서, 결산서주해, 재정상태설명서가 속한다.

제41조 (회계결산서의 반영내용)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리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자료를, 재정상태 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리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것을 반영한다.

제42조 (회계문건의 보존기간) 회계문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 5년
2. 회계장부 10년
3. 년간회계결산서 10년
4.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른다.

제43조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서류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날부터 한다.
2. 회계장부는 장부를 마감한 날부터 한다.
3.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은 날부터 한다.

제44조 (회계문건의 보관) 회계문건은 회계부서책임자의 책임밑에 해당 기업에 보관한다. 통합, 분리, 해산되는 기업은 해당 리사회에서 보관인과 보관장소를 정한다.

제 4 장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45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는 기업의 회계감독사업을 담당할 감독부서를 둘 수 있다.

제46조 (회계감독방법) 회계감독은 회계결산서와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기업의 회계사업정형을 직접 조사할수 있다.

제47조 (기업내부의 회계검증제도) 기업은 종합계산장부작성업무와 재산보관업무, 내부회계검증업무를 분리시키며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투자, 재산처분, 자금공급 같은 중요경제업무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8조 (출납업무의 검임금지) 기업은 출납업무와 회계장부기록계산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를 검임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9조 (회계업무인계) 조동, 동원, 병치료, 해임 같은 사유가 있는 회계원은 제3자의 립회밑에 회계사업을 인계하여야 한다.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기업의 책임자가 한다.

제50조 (손해보상) 회계업무집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업무중지) 회계결산서작성에서 중요자료를 무락시켰거나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6개월부터 1년까지 업무를 중지시킨다. 돈, 물품을 받고 사실과 어긋나게 회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상 업무를 중지시킨다.

제52조 (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결산서를 사실과 어긋나게 작성하였거나 의무적인 회계검증을 거절,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부 록】

2. 정당한 리유없이 회계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였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업이 년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 계산,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위법적인 회계계산을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53조 (연체료적용)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보낸 다음 7일이 지난날부터 한다.

3.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주체94(2005)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회계검증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은 공업지구에 설립한 회계검증사무소가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한다.

제 3 조 (회계검증의 준거규정) 회계검증은 이 규정과 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금규정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한다.

제 4 조 (회계검증의 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되는 지사,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항에서 지적하지 않은 기업은 연간 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

제 5 조 (회계검증에 대한 간섭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당한 독자적인 법인이다.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

제 6 조 (회계검증준칙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록】

제 2 장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제 7 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설립신청서의 심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가능수) 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둔다. 2개이상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 공업지구에 회계검증사무소를 내오려는 회계검증조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설립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경우 기본규약, 사무소성원의 자격, 경력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신청서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기본업무, 기구와 정원수, 책임자와 성원의 이름, 자격, 자본금총액, 존속기간, 해산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심의등록, 설립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날을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일로 한다.

제11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재등록) 기본규약, 기구와 정원수, 기본업무가 달라진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2.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3.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4.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5.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6. 이밖에 회계관련법규에 지적된 업무

제13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정원수와 자격) 회계검증사무소에는 3명 이상의 회계검증원과 1명 이상의 감정평가원을 둔다.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이 아래부터는 회계검증원이라 한다)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문에서 3년 이상 일한 자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는 회계검증원으로 사업할수 없다.

제14조 (회계검증원의 권한) 회계검증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같은 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으며 장부와 현물을 대조확인할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회계검증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수 없다.

제16조 (장부기록)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정형을 해당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기록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17조 (회계검증보고서작성) 회계검증원은 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 검증보고서의 부류, 검증과 관련한 의견, 보고날자, 회계검증원의 이름같은 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제18조 (업무제한) 회계검증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회계검증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검증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조 (위법행위처리)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정할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록】

제20조 (회계검증료)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 상담과 관련한 검증료 또는 봉사료를 받을수 있다. 검증료와 봉사료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 (손해보상준비금과 손해보상)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당기순리윤의 10%를 직전 회계연도 총수입액의 10%가 될 때까지 손해보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손해보상준비금의 류용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손해보상준비금을 손해보상에만 써야 한다. 손해보상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쓰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제23조 (회계검증내용) 기업은 회계검증을 제때에 정확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이 속한다.

제24조 (투자검증의무)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기업, 총투자액의 10%이상을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자증서의 발급,리윤분배,투자상환같은것을 할수 없다.

제25조 (투자검증대상) 투자검증은 기업이 작성한 투자보고서에 대하여 한다. 투자보고서에는 출자상태표와 화폐재산출자명세표, 현물재산출자명세표, 부동산출자명세표, 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같은 것이 속한다.

제26조 (투자검증기간) 기업창설투자에 대한 검증은 조업을 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통합, 분리에 대한 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끝낸 날부터 2개월 안으로, 재투자에 대한 검증은 해당투자를 끝낸 날부터 1개월 안으로 한다.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 회계검증사무소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중고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기업은 중고설비의 생산년월일과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내용년한, 사용한 기간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문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제28조 (결산검증의 대상) 결산검증은 기업의 월,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9조 (년간회계결산서의 제출기간)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2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회계업무량이 특별히 많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승인을 받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낼수도 있다.

제30조 (결산검증의 내용) 회계검증원은 결산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회계검증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결산서에 대한 설명서와 재정상태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회계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2. 주요 회계정책 및 예측과 그 변경정형
3. 우발사항과 결산후 발생한 경제거래정형
4. 중요재산의 처분정형
5. 기업의 통합, 분리정형
6. 회계결산서의 중요항목
7. 회계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2조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생산 및 경영상태

【부 록】

2. 리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3. 자금의 증감과 회전상태
4. 재정상태, 경영성적, 현금류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대차대조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3조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기간)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으로 기업의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끝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검증을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와 연장기간을 공업지구세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청산검증대상) 청산검증대상은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청산보고서이다. 청산보고서에는 청산재정상태표, 채권채무명세표, 자금원천분배표, 재산실사표, 국가납부표같은 것이 속한다.

제35조 (청산검증의무)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은 청산사업을 끝낸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청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산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에 조직된 청산위원회의 사업을 종결할 수 없으며 기업등록을 삭제할 수 없다.

제36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회계검증사무소는 투자검증보고서, 결산검증보고서, 청산검증보고서의 사본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해당 검증을 끝낸 날부터 7일 안으로 내야 한다.

제 4 장 감독통제

제37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회계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감독통제방법)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사무소가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회계검증에서 엄중한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9조 (업무중지처벌) 회계검증에서 중요한 자료를 투락시켰거나 엄중한 착오를 일으킨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6개월이상 1년까지 중지시킨다. 돈이나 물품을 받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한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1년이상 중지시킨다. 회계검증원이 3회이상 업무중지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검증사무소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40조 (벌금) 벌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업무기록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리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회계검증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1만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41조 (연체료)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7일이 지난 날부터 한다.

4.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주체94(2005)년 6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제 1 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자본조성과 리용, 리윤분배, 자본청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재정관리를 규범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영리활동을 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자본의 조성방식) 기업은 자본조성을 출자, 신용, 증여, 리윤저축 같은 방식으로 할수 있다.

제 4 조 (등록자본)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다. 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수 없다.

제 5 조 (등록자본의 규모) 등록자본은 자본총액의 10%이상으로 한다. 기업은 자본총액이 늘어나는데 맞게 등록자본을 늘여야 한다.

제 6 조 (투자의 형태) 기업은 투자를 화폐재산, 유형재산, 무형재산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화폐재산의 투자는 전환성외화로 하여야 한다. 무형재산의 투자몫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수 없다.

제 7 조 (투자의 인정시점) 투자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재산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입금시켰을 때
2. 부동산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유형재산은 공업지구에서 정해진 수속을 끝냈을 때
4. 무형재산은 도입 또는 리용으로 경제적리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 록】

제 8 조 (투자재산의 가격)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제 9 조 (유형재산의 내용년한)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축물은 20년 이상
2. 철도차량, 선박과 기계 같은 생산설비는 10년 이상
3.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수송수단은 5년 이상
4. 전자설비와 취득원가가 300US\$ 이상인 공구, 비품은 3년 이상

제10조 (유형재산의 감가상각) 유형 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형태와 리용방식, 과학기술발전영향 같은것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이 끝날때 까지 변경할수 없다.

제11조 (유형재산의 잔존가치평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이하로 평가할수 없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를 5%이하로 평가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무형재산의 내용년한) 무형 재산의 내용년한은 계약 또는 기업 설립신청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무형재산의 내용년한은 예상수익기간으로 하며 예상수익기간을 확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무형재산의 감가상각) 무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무형재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제14조 (감가상각의 금지) 기업은 경영활동에 리용하지 않는 고정재산과 건설중에 있거나 완성하지 못한 고정재산, 시일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물품구입과 생산제품판매) 기업은 물품을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한 제품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다.

제16조 (원가, 비용계산의 금지대상) 원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지출 또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구입을 위한 자본지출
2. 자기 자본에 대한 리자
3. 일반리자보다 높은 리자
4.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사용료
5. 대외투자 및 관련기업을 대신하여 지출된 관리비
6. 기준을 초과한 회수불가능채권 및 대외사업비
7. 몰수당한 재산손실액, 위약금, 연체료, 벌금, 보상금
8. 당기순이익으로 적립한 예비기금
9.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

제17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5년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대손충당금은 회수불가능한 판매채권, 대부금, 미수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일반기업은 당해년도 말 채권잔고의 1%, 금융기업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수 있다.

제19조 (퇴직보조금지불 대상자와 규모) 기업은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퇴직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퇴직보조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의 설정한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은 퇴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기업은 1년이상 일한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으로 설정할수 있다.

제21조 (종업원의 로임) 기업은 종업원의 로임을 공업지구 종업원월최저로임보다 낮지 않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부 록】

제22조 (관리성원의 로임) 기업은 관리성원의 로임기준을 세금납부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3조 (종업원의 상금) 기업은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수 있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전액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4조 (관리성원의 상금) 기업이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상금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넣어 계산할수 없다.

제25조 (대외사업비의 지출) 생산부문, 상업부문의 기업은 순판매액이 20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0.5%를, 200만US\$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0.3%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수 있다. 건설, 금융, 교통운수 같은 기타 봉사부문의 기업은 순영업액이 7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1%를, 70만US\$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0.5%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 (예비기금) 기업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당기순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수 있다.

제27조 (자체기금) 기업은 당기순리윤에서 예비기금과 리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원천이 있을 경우 자체기금을 적립할수 있다. 자체기금은 확대재생산, 기술발전 같은 기금으로 쓸수 있다.

제28조 (차입금상환) 기업은 차입금을 정한 기간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를 찾지 못하여 상환할수 없는 차입금은 예비기금에 포함시킨다.

제29조 (채무의 평가) 기업은 채무를 당해년도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0조 (감독 및 제재) 이 규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재정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0년간의 독일정책: 1969~79년간 동서
독관계 발전 중심』, 1982. 9.
-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연구
보고서 95-15,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 대한상사중재원,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1994.
- 민족통일연구원,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1993.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한은조사연구 2002-3, 한국은행,
2002. 4.
- _____,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 8.
- 박정동,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일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00.
- _____, 『북한의 경제특구 - 중국과의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1996.
-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V)』, 한국법제연구원, 1998.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_____, 『북한헌법(1998)상 경제조항과 남북한경제통합』, 한국법제연구원,
1999.
- 법무부, 『북한법연구 I: 통치기구·사법제도』, 1985.
- _____,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1997.
- _____,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분석』, 법무부, 2002. 12.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1995.
- 법제처,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1999.

<참 고 문 헌>

- _____, 『북한법제개요』, 1991.
- _____, 『북한의 합영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2.
- _____, 『중국법제개요』, 1990.
-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1991.
- _____, 『북한총람』, 1994.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 손희두,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손희두 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2.
- 손희두 편, 『북한의 법령 및 법규해설』,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신응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 법규 -』, 한국무역협회, 1998.
-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헌법 연구 -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자료 -』, 국민대출판부, 1998.
-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5.
- 전홍택,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자료 93-05,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조명철, 『북한의 시장경제교육실태와 남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최의철,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 최종고 외,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통일원, 『동서독 경제협력 사례집』, 1995.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법제분석 94-1, 한국법제연구원, 1994.
-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2005. 1. 11.
- _____,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 11. 4.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1.
- 황의각, 『북한경제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2.
- 강현철, “남북한 및 중국의 경제특구법제”, 한국국제지역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3. 5. 16.
- 고일동, “북한 재정위기의 본질과 세입관리체계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제6권 제9호, 2004. 10.
- 권오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4권제4호, 1993 겨울.
- 김광수, “국제회계기준(IAS)의 발전”, 강원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과학연구』 제30집, 2004. 6.
- 김동률, “기업회계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외대론집』 제26집, 2003. 2.
- 김동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회계제도의 발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연구소, 『국제경영론집』 제18집, 2003. 2.
- 김병호, “대북한 투자와 관련된 북한회계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 『북악경영연구』 1호, 1995. 2.
- _____,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제1권 제3호, 2004. 12.

<참 고 문 헌>

- _____, “북한회계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제15호, 2001. 6.
- 김정만,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제도”,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제21권 제7호, 2002. 7.
- 김형구,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방안”, 강원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과학연구』 제29집, 2003.
- 김확열, “사회주의에서 회계의 역할 -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회계제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2집 인문사회과학편, 2000. 2.
- _____, “중국 회계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7집 인문사회과학편, 2002. 8.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 박정대, 김영훈, “한국과 북한의 회계기준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디지털경제연구』 제9권, 2004.
- 배종렬, “북한 외자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국내기업의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6권 1호, 1995.
- 백진현, “남북경협과 미국의 대북한 통상규제”, 『통일문제연구』, 제4권 2호, 1992.
- 손광락, “북한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9집, 1997. 3.
- 송동섭, “중국 회계제도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5집 제3호, 2000. 12.
-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월간 경영법무』, 1995. 8.

- 신현윤,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발전방향 - 동·서독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법원행정처, 2004.
- _____, “북한의 기업소제도”, 법조협회, 『법조』 530호, 2000. 11.
- 왕순모, “기업회계법의 구축과 전망(1) -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 -”, 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3. 2.
- 윤병수,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향후과제 - 중국 및 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5년 10월호, 2005. 10.
- 윤상직, “북한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대외경제중재법상의 무역중재를 중심으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2000년 2월호.
- 이순우,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법·제도 실천과제 연구』, 1993.
- 이재실, “사회주의시장경제하의 중국기업회계제도: ‘기업회계준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제8권 제2호, 2001. 12.
- 이정호, 김원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발전과정”,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론집』 제37권 4호. 2003. 12.
- 이종운, “정부회계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감사원, 『감사』 통권 제81호, 2004. 1.
- 이주성, “중국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충청실업전문대학, 『논문집』 제6호, 1990. 12.
- 이천표, “‘투명한 회계기준’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론집』 제43권 제1·2호, 2004. 6.
- 장명봉,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정책과제, 2002.

<참 고 문 헌>

- 정동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법”,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 , “북한대외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고려대 법학연구소, 『북한법을 행정론집』 제10집, 1995.
- 정민수, “남·북한 재정기능과 북한재정의 발전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2호, 1998. 10.
- 정영화, “개성경제특구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처 남북법제연구반 전문가초청간담회 발표논문, 2003. 11. 13.
- 정원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9년 5월호.
-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전략』, 1993.
-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령 분석 및 평가”,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 최상문, “북한의 회계제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제논총』 제4집, 1995. 5.
- , 김형건, “중국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을 중심으로”, 부산대 상과대학, 『부산상대론집』 68호, 1997. 6.
- 최수천, 최순희,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제도 연구”, 계명문화대학 산업개발연구소, 『계명연구론총』 제17집, 1999. 3.
- 한문성, “중국의 회계법과 회계준칙에 관한 고찰”,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산업경영연구』 제7호, 2000. 12.
- 함강국, “회계기준의 국제적 수렴에 대한 각국의 수용방안”,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제281호, 2004. 5.

황동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V): 금융 및 외화 관리”,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7월호.

2. 북한문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2005』, 200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리원경, 『사회주의화폐제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_____,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김남순, “대외무역에 따르는 국제결제를 잘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89. 2).

김웅호,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

<참 고 문 헌>

-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4).
- 리종열, “공화국무역상사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임무”, 『법학논문집 4』(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리학철, “공화국경제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제50권 제1호.
- 서창섭, “우리나라 계획적 계약의 법적 본성과 그 리행원칙”, 『법학논문집 4』(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최영욱, “현 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2).
- 한수길,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오늘의 요구”, 『근로자』, 1991년 4호.

3. 외국문헌

- 大内憲昭,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社會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基本法令集付』(東京: 明石書店, 1995).
- 小島麗逸(編著), 『中國の經濟改革』(東京: 勁草書房, 1988).
- 金文成, “擴大發展している對外關係と外國人投資の展望について”,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1999年 5月號.
- Bailey, D., Accounting in Socialist Countries (London and Newyork: Routlege, 1988).
-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Chung, Joseph Sang-hoon,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Appraisal and Prospects” in Young C. Kim, ed., Foreign Policies of Korea, 1973.
- Lee, Joung-Koon, “North Korean Foreign Trade in Recent Years and the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Trade”,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V, No. 3, 1974. 10.